KT 시내전화 이용약관

2019. 3

제 1 조(약관의 적용) ..... - 3 -
제 2 조(서비스의 종류) ..... - 3 -
제 3 조(가입구역 등) ..... - 3 -
제 4 조(계약의 종류) ..... - 3 -
제 5 조(청약 및 승낙) ..... - 4 -
제 5 조의 1(계약의 해지) ..... - 4 -
제 6 조(전화번호의 부여) ..... - 5 -
제 7 조(단말기기의 설치) ..... - 6 -
제 8 조(서비스의 개통) ..... - 6 -
제 9 조(보도용전화) ..... - 6 -
제 10 조(복지통신서비스) ..... - 6 -
제 11 조(특수번호전화) ..... - 7 -
제 12 조(주요통신서비스) ..... - 7 -
제 13 조([개인]용 복수전화) ..... - 8 -
제 14 조(전화번호부 게재 및 발행) ..... - 8 -
제 15 조(이용정지) ..... - 8 -
제 16 조(이용휴지등) ..... - 9 -
제 17 조(종류변경) ..... - 9 -
제 18 조(설치장소의 이전) ..... - 9 -
제 19 조(이용권의 양도.승계) ..... - 10 -
제 20 조(일시정지(일시이용중단)) ..... - 10 -
제 21 조(전화회선의 타인활용) ..... - 11 -
제 22 조(계약의 해제.해지) ..... - 11 -
제 23 조(요금의 산정) ..... - 12 -
제 24 조(요금의 납기일) ..... - 12 -
제 25 조(후납) ..... - 12 -
제 26 조(감면 및 할인) ..... - 12 -
제 27 조(요금의 이의신청 및 반환) ..... - 12 -
제 28 조 (보증금) ..... - 13 -
제 29 조(손해배상) ..... - 13 -
제 30 조(사전선택) ..... - 14 -
제 31 조(변경신청 및 등록) ..... - 14 -
제 32 조(책임의 한계) ..... - 14 -
제 34 조(책임의 한계) ..... - 15 -
제 35 조(원폰(DU:)서비스) ..... - 15 -
제 36 조(약관의 적용) ..... - 15 -
제 37 조(원폰 단말기(DU:(폰)) ..... - 15 -
제 38 조(무선접속장치(DU:AP)) ..... - 15 -
제 39 조(권리 및 의무) ..... - 15 -

제 40 조(손해배상) ..... - 16 -
제 41 조(동등접속) ..... - 16 -
제 42 조(발신번호표시서비스) ..... - 16 -
제 43 조(메세지서비스) ..... - 17 -
제 44 조(통화중 자동연결서비스) ..... - 17 -
제 45 조(가입자정보제공) ..... - 17 -
제 46 조(발신번호 안내서비스) ..... - 17 -
제 47 조(번호유지 서비스) ..... - 17 -
제 48 조(의무약정 보조금 설정) ..... - 18 -

시내전화이용약관

제 1 장 총 칙

제 1 조(약관의 적용)
시내전화(이하 "전화"라 합니다)는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전기통신 사업법령에서 정하는 통화권 안에서 음성 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게 하는 전기통신 역무 및 이에 부수하는 서비스로 시내전화를 이용할 때에는 이 약관과 전기통신서비스이용기본약관 을 함께 적용합니다.

제 2 장 계 약

제 2 조(서비스의 종류)
① 계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전화서비스의 종류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 류	내 용
1. 기본서비스 가. 시내통화 2. 부가서비스	 동일 통화권내에서의 전화통화 전 호의 기본서비스 외에 이용자의 서비스이용 편의 및 관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② 전항의 부가서비스 종류 및 내용은 "별표 3"과 같습니다.

제 3 조(가입구역 등)

① 케이티는 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통화권을 가입구역으로 운영하며 그 가입구역내의 급지는 전화 시설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합니다.

급 지	4 급지	5 급지	6 급지	7 급지	8 급지	9 급지	10 급지
시설수	10,000 이하	10,001 - 20,000	20,001 - 50,000	50,001- 100,000	100,001 -200,000	200,001 - 400,000	400,001 이상

② 가입구역의 변경으로 인해 급지가 상향 조정되더라도 가입구역 변경일 이전에 가입된 시내전화는 변경전의 기본료를 적용합니다.

제 4 조(계약의 종류)
① 시내전화 서비스에 대한 계약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1 과 같습니다.
1. 가입비납입형 : 전화서비스의 청약접수·설치·개통 등에 발생하는 비용인 가입비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가입(다만, 계약을 해지할 때 가입비를 돌려주지 않음)
2. 단기가입형 : 1 개월이내의 기간동안 이용하기 위하여 가입비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가입. 다만,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2 개월 연장 가능
   가. 단기전화 : 전화가입구역에 설치하여 제공하는 전화
3. 설비비부담형 : 2001 년 4 월 14 일까지 가입한 계약자로서 설비투자에 드는 설비비를 부담하고 전화 설치 및 개통에 따른 장치비를 별도 납부하는 조건으로 가입(단 계약을 해지할 때 계약자가 부담한 설비비를 돌려줌)

②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가입비납입형이나 단기가입형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여

케이티에 청약하여야 합니다.

제 5 조(청약 및 승낙)

시내전화 서비스 또는 부가서비스(요금제 포함)를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 5]에 의한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케이티에 청약해야 하며, 케이티는 제출된 관련 청약증빙자료(청약서, 구비서류 등)를 보관 해야 합니다. 다만, 인터넷 청약과 휴대폰 본인인증, 번호이동성 이용, 녹취 본인확인, 신용카드 인증을 통한 청약일 경우에는 구비서류 제출을 면제하며, 본인 청약여부는 전화 등으로 확인합니다.

① 가입자와 납부자가 다른 경우는 자동납부만 가능하며 납부자 본인의 의사 확인 후 접수 처리합니다.

② 청약방법은 창구청약, 전화청약 및 인터넷 청약 및 전자 청약이 있습니다.

③ 케이티는 제 1 항의 청약에 따라 가입비를 선납 또는 후납하는 조건으로 청약을 승낙합니다.

④ 이용계약서 교부는 가입신청서, 요금고지서, SMS, E-mail 등을 통하여 교부합니다. 전화청약 및 인터넷청약의 경우에는 전화녹취로 서비스 주요내용 설명 및 신청서를 대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계약정보는 요금고지서, SMS, E-mail 등의 방법으로 별도 교부합니다.

⑤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다음에 해당할 경우 케이티는 단기가입형 서비스의 계약연장을 포함하여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의 청약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 통신사를 불문하고, 불법스팸 전송 등으로 유선전화 서비스의 이용정지 또는 계약해지를 당한 이후 1 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단 시내/시외전화 1 회선 개통의 경우나, 이용정지 또는 계약해지가 타인의 명의도용 등 이용자의 과실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는 제외함

나.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스팸 또는 불법스팸 전송자로 확인되어 이용정지 혹은 계약해지를 요청 받은 경우

제 5 조의 1(계약의 해지)

① 고객 또는 대리인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희망일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해지희망일은 해지 접수일자부터 익월 말일까지의 일자 중에서 예약이 가능합니다. 이용고객은 해지희망일까지 [별표 5]에 의한 구비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단 휴대폰 본인인증을 통한 해지인 경우에는 구비서류 제출을 면제합니다. 신청방법은 창구접수, 전화(고객센터 100)접수, 전자 청약, FAX 또는 우편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케이티는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타인명의를 사용하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한 청약임이 확인된 때
2. 이용이 정지된 후 제 15 조에서 규정한 기일 내에 이용정지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한 경우
3.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문자 및 멀티미디어메시지 등의 무차별적인 스팸 메시지 발송이 확인된 경우

③ 케이티는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일 10 일전까지 해당 고객에게 그 사유 등을 통보합니다. 다만,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④ 전항의 통지에 불구하고 고객이 지정 일시까지 의견을 진술하지 않는 경우 해지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 합니다.

⑤ 케이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그 이해 당사자가 해지를 요구할 경우 케이티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납요금에 대해서도 청구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1. 미성년자 가입시 법정대리인(부모 등)의 동의(동의서, 인감증명서 등 "별첨 4" 구비서류)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이용계약
2. 타인(부모, 친인척, 지인관계 등)의 명의를 도용하여 체결한 이용계약

⑥ 번호이동가입자의 변경전 이용계약은 변경전 사업자의 번호이동 승인과 동시에 자동해지 됩니다

⑦ 케이티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해지계약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보유합니다.

1. 케이티는 국세기본법 제 85 조의 3(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규정에 의거 거래사실에 관한 고객의 개인정보(DB 및 서류)를 5 년 간 보관합니다.

⑧ 케이티가 이용계약 관련 주요 내용이 명시된 이용계약서(신청서) 에 서명, 전자인증(공인인증서, 휴대폰인증 등)을 받지 않았거나 전화녹취를 하지 않은 경우 해지 시 할인반환금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⑨ 서비스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어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한 고객이 변경사항이 고지된 시점으로부터 2 개월이내 해지하는 경우 할인반환금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⑩ 서비스 이용고객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서비스이용료의 할인반환금 50%를 감경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1. 타 통신사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여 KT서비스 설치가 불가한 건물로 이전하는 경우
2. 해외 이민으로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 5 조의 2(회사의 의무)

① 케이티는 요금 등 서비스와 관련한 중요한 규정이 고객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소 1 개월 전에 홈페이지를 통하여 안내하고, 해당 변경사항을 적용 받는 이용자에게는 청구서, 이메일, SMS 등을 통하여 공지합니다. 다만, 연락처 미기재 및 연락 불가 시는 공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항이 실질적으로 고객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 2 개월 이내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함께 고지하며, 위 기간 내 해지하지 않는 경우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② 케이티는 동의한 이용자에 한하여 이용자의 요금연체 정보를 신용정보법 제 15 조의 신용정보회사등에 제공하기 전에 이용자 본인(법인 고객 제외)에게 연체정보 제공 사실을 알립니다. (단, 연체 금액이 1 만원 미만일 경우, 의무사항이 아님)

제 5 조의 3(스팸 관련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이용)

케이티는 불법스팸 전송 등으로 서비스 이용정지 및 계약해지를 한 고객의 서비스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을 유보하기 위해 고객 정보를 수집하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제공하거나 1 년간 보관하며, 해당 이용자가 다른 통신사의 유선전화 서비스 신규가입 등을 신청하는 경우 다른 통신사에서 조회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제 6 조(전화번호의 부여)

케이티는 청약의 승낙순서에 따라 일정한 수의 전화번호를 제시하고 계약자에게 선택하게 합니다. 다만,우편청약 등으로 전화번호 선택이 곤란한 경우와 케이티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6 조의 1(전화번호의 변경)

① 케이티는 이용자의 전화번호 변경 요청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용자의 요청에 응합니다. 이 경우 전화번호 변경 업무처리에 따른 수수료를 청구합니다.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3 개월을 기준으로 1 회선당 2 회를 초과하여 전화번호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또는 스팸 발송으로 인하여 이용이 정지된 경우 케이티는 이용자의 요청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7 조(단말기기의 설치)

다음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케이티가 단말기기를 확보하여 설치 합니다.

1. 단기전화 청약중 대규모(30 회선)로 청약하는 경우 또는 청약즉시 개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 10 조제 1 항 제 6 호 내지 제 7 호에 의한 대상자의 복지통신전화를 설치하는 경우
3. 그 밖에 케이티가 정하는 경우

제 8 조(서비스의 개통)

전화 개통은 설치공사가 끝나고 계약자에게 개통 사실을 통보하였거나, 서비스를 이용하기 시작한 때로 합니다.

제 3 장 서비스 이용

제 9 조(보도용전화)

① 보도기관에 설치된 전화에 대한 요금을 감면 받기 위하여 케이티에 보도용 전화로 지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중 하나와 같습니다.

1. 신문사: 1 의 제호로서 1 일 20,000 부 이상을 발행하는 일간신문사(지방 일간신문사를 포함 합니다)로서 본사,지사,총국 및 지국,총국 또는 지국이 없는 군 단위 1 개 보급소(1 개보급소에 한합니다)
2. 통신사: 전파법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받은 통신사 및 동지사
3. 방송국: 전파법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받은 방송국, 동지사, 동중계소 및 동분실

② 전항의 보도용전화가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합니다.

1. 보도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2. 구내교환설비의 국선으로 이용하는 경우
3. 전화의 설치장소에 보도를 전담하는 직원이 상주하지 않는 경우

③ 착신자요금부담서비스 및 신용통화서비스를 이용하는 전화는 보도용전화로 지정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 10 조(복지통신서비스)

①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자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금이 감면되는 복지통신서비스의 지정을 케이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2.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단체 또는 비영리목적의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로 등록된 자

3.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장애인 특수학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 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및 6·18 자유상이자
5.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및 4·19 민주혁명회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구성된 가구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중 생활조정수당대상자
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유족증 소유자
9.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10.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 민주유공자 중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② 제 1 항에 의한 대상자별 복지통신전화 지정대수는 다음 각호와 같으며 자사 및 타 통신사의 시내전화·인터넷전화 서비스와 중복하여 감면하지 않습니다.
1. 제 1 호,제 4 호,제 6 호,제 7 호,제 8 호,제 10 호의 경우: 1 대상자당 1 대(단, 제 6 호는 가구당 1 대)
2. 제 2 호,제 3 호,제 5 호,제 9 호의 경우: 1 대상자당 2 대
3. 제 2 호,제 3 호 대상자중 청각·언어장애인 복지시설 및 특수학교의 경우: 팩스설치용으로 추가 1 대

③ 복지통신서비스로 지정 받은 경우에도 다음 서비스에 대한 이용요금은 감면 받을 수 없습니다.
1. 착신자요금부담통화 및 신용통화
2. 타인사용증설
3. 구내교환전화로의 종류변경
4. 제 1 항 제 6 호와 제 7 호에 의한 복지통신전화를 종합정보통신서비스(ISDN)로의 종류변경

④ 케이티는 복지통신전화가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수 있습니다.
1. 지정사유가 해소되었거나 또는 지정목적과 다르게 이용하는 경우
2. 영업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또는 지정대상자가 아닌 타인에게 이용하게하는 경우
3. 동일대상자명의로 복지용 종합정보통신서비스(ISDN)를 지정받은 경우

⑤ 케이티는 복지통신서비스 신규 및 기존 이용자가 복지감면대상자 대상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등에 개인정보 조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 11 조(특수번호전화)

① 3 자리 또는 4 자리 숫자로된 특수번호전화의 이용범위 및 용도는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에 따릅니다.

② 전항에 따라 특수번호 전화를 청약하는 경우에는 케이티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③ 특수번호서비스 제공을 위해 통화권별 노드 또는 전국망을 구축하지 않는 경우 케이티의 특수번호회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④ 특수번호회선은 콜센터 소재 광역 통화권을 기준으로 시내와 시외로 구분합니다

제 12 조(주요통신서비스)

다음 각호의 계약자는 안정적인 공공업무 수행을 위해 상호간의 통화를 주요통신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정부투자기관(출자기관 포함)
4. 공공업무 수행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 12 조의 1(중요통신 확보의 의무)
케이티는 전기통신사업법 제 85 조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중요통신 확보를 위해 전기통신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것을 명할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 또는 정지할 수 있습니다.

제 13 조([개인]용 복수전화)
① KT 는 시설범위 내에서 [개인]용 복수전화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개인]용 복수전화는 시내전화에 추가하여 설치하는 전화 회선을 말합니다. (단, 기본전화 기준으로 1 회선에 한함)

제 14 조(전화번호부 게재 및 발행)
① 전화번호부 게재는 계약자가 청구한 번호정보(성명 또는 상호, 전화번호, 설치주소)를 1 개 전화번호에 1 개 게재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와 구내교환전화의 구내선 전화번호는 전화번호부에 게재하지 않습니다.
② 케이티는 전화번호부를 인명전화번호부, 상호전화번호부, 업종전화번호부로 구분하여 인쇄와 전자적 형태(CD-ROM)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제 15 조(이용정지)
① 케이티는 다음 중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 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전화의 서비스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1. 요금과 가산금을 납부하라는 독촉을 받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체납요금이 설비비부담형 계약자의 반환 설비비 이하 또는 가입비납입형 계약자의 가입비 이하인 경우에는 최초의 요금납기월 말일 다음날로부터 3 개월이 지났을때
나.'가'목 이외의 경우에는 최초의 요금납기월 말일 다음날로부터 2 개월이 지났을때
2. 케이티가 설치한 설비를 승인없이 이동,철거,변경,분해하거나 다른 설비 등에 연결한 경우
3. 전화를 정당한 설치장소 외에 설치한 경우
4. 단말기기가 전기통신기자재 형식승인제품 등 규격제품이 아니거나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관한 규칙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케이티의 시정 또는 철거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5. 정당한 사유없이 관계 직원의 이용 실태확인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여 계약을 어긴 사실을 숨긴 경우
6. 부당한 대가를 받을 목적으로 전화를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경우
7.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에 정보통신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로 방송통신위원회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요청한 경우
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 조의 7 항(불법정보의 유통 금지 등) 위반시
9. 전기통신사업법 제 30 조(타인사용의 제한) 위반시
10. 이용고객이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위범행위를 위한 수단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수사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의해 확인되어 해당 기관이

증빙자료를 첨부해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3 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4 조(금지행위) 및 제 20 조(벌칙)

나. [청소년 보호법] 제 19 조 1 항

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9 조의 2 항

11. 이용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정지할 수 있습니다.

가.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스팸 또는 불법스팸 전송자로 확인되어 이용정지를 요청받은 경우, 제공하는 서비스를 불법스팸에 이용하는 경우

② 케이티는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이용할수 있도록 합니다

③ 제 1 항 제 7 호, 제 10 호, 제 11 호의 규정에 의한 이용정지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정지를 요청한 기관에 이의제기를 하여야 합니다.

④ 제 1 항 제 7 호, 제 10 호, 제 11 호에 따라 이용정지가 된 경우 이용정지 요청 기관에서 이용정지의 해소를 요청하면 회사는 서비스 이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제 16 조(이용휴지등)

① 케이티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휴지처리하고 그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이용할수 있도록 합니다.

1. 전화의 설치장소 이전 청구에 시설이나 기술적인 문제로 제공할 수 없는 경우
2. 일시정지(일시이용중단)의 최대 기간을 초과하여 서비스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3. 전화회선을 다른 서비스 제공에 <임시로> 사용한 경우

② 계약자는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5 년 이내의 기간동안 계약휴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휴지일 현재까지의 미납 또는 정산하지 않은 요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이용중인 전화번호의 이용을 희망하지 않아 그 회선을 타인에게 임의로 사용하도록 한 경우

제 4 장 계약의 변경 및 종료

제 17 조(종류변경)

① 계약자는 케이티에 신고하여 전화를 구내교환전화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제 4 조 제 1 항에 의한 계약종류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기존 설비비형 계약자가 가입비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 후 신규청약하여야 합니다.

③ 케이티 사유로 인해 종합정보통신서비스(ISDN) 제공이 곤란하여 시내전화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 4 조 제 1 항 제 1 호에 의한 가입비납입형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

제 18 조(설치장소의 이전)

① 기본약관에서 정한 구내이전의 경우와 같은 구내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하나의 건물과 그 부지
2. 상호간의 최단거리가 100m 이내(업무수행상 또는 기술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100m 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에 있고 1 인의 점유에 속하는 2 이상의 건물과 그 부지(도로 또는 하천 으로 분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② 계약자는 구외로 이전하거나 타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케이티에 청구하여 그 전화의 철거 희망일 1 개월전부터 새로이 설치될 장소에 또 하나의 전화를 미리 설치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 19 조(이용권의 양도.승계)

① 1970 년 8 월 31 일 이전에 승낙된 전화에 한하여 계약자는 이용권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② 전화의 이용권을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케이티에 신청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있습니다.

1. 전화설치 장소에서 실제 이용하는 경우
2. 가족간 또는 가족관계 변동에 따라 부득이 필요한 경우
3. 법인(개인사업자, 관청, 단체 포함) 상호간 사업 양/수도 또는 합병 등 및 동일 법인의 단순 상호변경의 경우
4. 개인과 법인(개인사업자, 관청, 단체 포함) 상호간에는 법인 입/퇴사 후 법인 또는 개인명의로 승계, 승계한 후 승계 전 명의로 다시 승계, 기타 사업의 연속성이 확인되는 경우

③ 제 2 항의 양도 또는 승계에도 불구하고, 제 2 항 제 4 호의 개인과 법인 상호간에는 전기통신번호를 기준으로 가입일, 이전의 양도 또는 승계일로부터 3 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④ 전화의 이용권을 양도 또는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5]에 의한 청약 구비서류와 다음 각 호에 의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제 2 항 제 1 호의 경우, 전화설치 장소와 동일한 주소가 등재된 행정기관에서 발행한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등의 서류 1 가지
2. 제 2 항 제 2 호의 경우, 가족 또는 가족관계 변동을 입증 할 수 있는 행정기관에서 발행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 1 가지
3. 제 2 항 제 3 호의 경우, 회사 양수도 계약서 사본, 회사 합병계약 서 사본 등의 서류 1 가지
4. 제 2 항 제 4 호의 경우,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기타 사업의 연 속성을 확인하는 서류 중 1 가지

⑤ 제 2 항에 의한 전화승계에 따른 원계약자의 이의제기시는 전화이용권을 회복시킬 수 있으며, 승계받은 자의 계약해지 및 승계 등 전화이용권을 일정기간 동안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 20 조(일시정지(일시이용중단))

① 계약자는 케이티에 청구하여 일정기간 동안 서비스의 이용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시정지(일시이용중단) 신청일까지의 체납 또는 미정산 요금이 있으면 일시정지(일시이용중단) 신청이 불가합니다.

② 제 1 항에 의한 일시정지(일시이용중단) 회수는 1 년에 3 회 이내로 하며, 1 년 동안 최대 90 일(3 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케이티가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케이티가 인정하는 증빙서류[별표 5] 제출 시 군입대는 복무기간 동안, 해외유학의 경우 최대 1 년까지 일시정지(일시이용중단)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일시정지(일시이용중단) 기간은 사용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고객이 신청한 일시정지(일시이용중단) 해소 일자에 서비스를 자동으로 재개합니다.

⑤ 케이티는 일시정지(일시이용중단) 해소 전/후 고객에게 SMS 등의 방법으로 안내 합니다. 단, 고객측 사유(전화번호 변경, 무응답 등)로 연락이 되지 않은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⑥ 조건부가입구역으로 설치장소이전을 청구하고 선로 시설비를 납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시설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시정지(일시이용중단)으로 봅니다.

제 21 조(전화회선의 타인활용)
케이티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자의 전화회선을 타인에게 활용하게 하고 그사유가 해소되면 다른 회선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신청 접수후 최초 개통예정일로 부터 연기 청구없이 1 개월을 초과하거나 설치공사의 연기 기간이 1 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2. 시설 및 기술상 전화의 설치장소변경 청구에 응할 수 없어 이용휴지 기간이 3 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3. 일시정지(일시이용중단) 종료일로부터 3 개월을 넘기는 경우 또는 일시정지(일시이용중단) 기간에 관계없이 이용중인 전화번호의 유지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제 22 조(계약의 해제.해지)
① 케이티는 다음 중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신규승낙에 따른 가입비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은 경우
2. 서비스 이용이 정지된 후 1 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이용정지 사유를 해소하지 않은 경우
3. 타인명의를 사용하여 청약한 경우
4. 제 16 조에 의한 휴지일로부터 5 년이 지나도록 휴지 사유가 해소되지 않거나 또는 계약자로부터 부활청구가 없는 경우
5. 부여 받은 전기통신번호가 판매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실제 번호사용 의사가 없는 경우
6. 제 15 조(이용정지) 제 1 항 제 10 호에 해당되고, 이용정지 기간 동안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해지 할 수 있습니다.
7.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가.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불법스팸 전송과 관련하여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나. 서비스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스팸을 전송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② 제 1 항 제 5 호에 해당하는 미래창조과학부의 회수명령 대상의 경우 케이티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고지 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용자의 사유로 고지 할 수 없는 경우나 고지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을 경우 고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SMS 발송 또는 TM 실시
2. 내용증명 발송

③ 제 2 항에 따라 고지를 받은 이용자가 고지 내용의 기한 이내에 정당한 사유의 소명 또는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계약 의 해제 또는 해지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2 차례 이상 회수명령 대상이 된 경우 즉시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 5 장 요 금

제 23 조(요금의 산정)

① 계약자가 서비스의 이용대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요금등 부과주기 및 요율은 "별표 1"과 같습니다.

② 다음 요금은 케이티가 정하는 매월 일정한 날(이하 "기산일" 이라 합니다)로부터 만 1 개월이 되는 날까지(이하"요금월"이라합니다)를 1 개월분의 요금(이하"월액요금"이라 합니다)으로 합니다.

1. 기본료
2. 시내통화료
3. 부가서비스료

③ 부가서비스를 이용하여 통화를 전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통화료를 부담합니다. 다만, 발신자가 전환된 단말기까지의 통화료 부담을 승낙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1. 발신자: 발신자로부터 서비스계약자까지의 통화료
2. 서비스계약자: 서비스 계약자로부터 전환된 단말기까지의 통화료(단, 동일통화권내의 KT 시내전화로 착신전환되는 경우와 시외교환기를 경유하지 않고 무선호출 단말기로 착신전환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동일 통화권내의 KT 외 시내전화로 착신전환되는 경우는 월 60 분까지 무료통화가 적용되며, 초과시 정상과금 됩니다)

④ 케이티는 계약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전화통화를 하지 못한 사실을 계약자가 케이티에 통지한 때(그 전에 케이티가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알게 된 때)로부터 계속 6 시간이상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일수의 기본료와 부가서비스료는 산정하지 않습니다.

⑤ 최저이용료가 정해진 서비스의 요금이 최저이용료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저이용료를 적용하고, 그 이상인 경우에는 실사용 요금을 적용합니다. 다만, 최저이용료가 월단위로 적용되는 서비스인 경우 요금월 중도에 서비스의 개통, 해지, 이용정지와 그 해제, 부활 등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실사용 요금을 적용하거나, 최저이용료를 일할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제 24 조(요금의 납기일)

① 케이티는 전조에 의한 월액요금의 납기일을 사회적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지정합니다.

② 월액요금을 제외한 요금은 사유발생시 즉시 납부하게 하거나 또는 별도의 납기일을 정하여 납부하도록 청구합니다. 다만, 요금이 일정금액 이하일 경우에는 일정기간 누적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 25 조(후납)

케이티는 계약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요금등을 후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 26 조(감면 및 할인)

① 요금등의 감면, 할인대상 및 요율은 "별표 2"와 같습니다.

② "별표 2"에 의한 감면대상자는 자격요건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신속히 케이티에 알려야 합니다.

제 27 조(요금의 이의신청 및 반환)

① 케이티가 청구한 요금에 계약자의 이의가 있는 경우에 따로 정한 절차에 따라 조사 후 정당하다고 인정되거나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금을 돌려줍니다.

1. 전화를 개통하기 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 계약자가 납입한 가입비
2. 설비비부담형 계약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자가 납입 한 설비비
3. 설치장소 이전 청구를 개통하기 전에 취소한 경우의 납입 한 이전비
4. 계약자가 더 많이 냈거나 잘못 납부한 요금 등

② 케이티는 전항에 의하여 요금 등을 돌려줌에 있어서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1. 돌려 주어야 할 금액을 고객이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따로 정한 절차에 따라 고객이 원하는 방법으로 현금을 환급하거나 다음에 발생되는 요금에서 감액 처리
2. 납부되지 않은 요금에 대해서는 10 일 이내에 납기일을 재지정 하여 조정된 요금을 청구
3. 계약자가 납입하지 않은 체납요금이 있는 경우에는 상계처리
4. 정산되지 않은 요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당액의 지급을 보류

③ 설비비형가입자가 설치장소의 이전없이 급지변경으로 급지간의 설비비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또는 설치장소 이전에 의한 급지 변경으로 설비비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따른 차액설비비는 징수 또는 돌려주지 않습니다.

제 28 조 (보증금)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기본약관 제 9 조 1 항 6 호에 의거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 집중기관의 신용정보 관리규약, 신용정보사의 신용정보공통관리규약 등에 따라 채무불이행정보, 공공기록 정보중 체납정보, 금융질서 문란자 정보 등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 케이티는 보증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청약을 승낙할 수 있으며, 보증금은 별표에 기재된 바와 같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제 29 조(손해배상)

① 케이티는 이용고객이 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 그 뜻을 회사에 통지한 시간과 회사에서 인지한 시간 중 빠른 시간을 기준으로 연속 3 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하거나 1 개월 누적시간이 6 시간을 초과할 경우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청구금액의 6 배에 상당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이용고객의 청구에 의해 협의하여 손해배상을 합니다. 다만, 그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이용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② 케이티는 이용고객이 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한 경우로서 그 뜻을 회사에 통지한 후(그 이전에 회사가 그 뜻을 안 때에는 그 알게 된 때)부터 연속 3 시간 이상 그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하거나 1 개월 누적시간이 24 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한 일수에 따라 청구금액의 일 평균액을 계산하여 이용고객의 청구의 의해 협의하여 반환합니다. 다만, 1 회 3 시간 미만 장애 발생에 대하여는 실제 장애시간을 누적한 시간을 1 일 단위로 계산하고 2 일에 거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12 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 일로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③ 케이티가 이용자로부터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통지 받은 경우에는 서비스 재개를 위해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된 경우 이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케이티는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1 의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
1.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2. 이용 고객이 직접 구입한 단말장치 등의 불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3. 이용고객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4. 산간오지, 도서 등 케이티 유지보수 직원이 상주하지 않는 지역

⑤ 케이티는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일자 및 시간, 서비스 재개를 위한 회사의 조치내역과 서비스 재개시점에 대한 정보를 관리합니다.

⑥ 상기 ①, ②항에 대하여 회사에 청구하고자 하는 고객은 사유, 청구금액 등을 서면, 메일, 홈페이지, 전화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제 7 장 시외전화 사전선택

제 30 조(사전선택)

① 이 약관에 의하여 시내전화를 신규가입하는 경우 청약자는 시외자동통화의 이용을 위하여 전화신규가입신청서에 표시된 시외전화사업자 (이하"시외사업자"라 합니다)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정하여야 합니다.
② 케이티는 시외자동통화를 전항에 따라 선택지정한 시외사업자 회선에 접속합니다.
③ 시외자동통화 이용에 따른 이용조건과 요금등은 시외사업자가 정하여 공시한 이용약관을 적용합니다.

제 31 조(변경신청 및 등록)

① 기존의 이용자가 시외자동통화를 이용하기 위하여 시외사업자를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자는 최근 등록일로 부터 9 개월이 지난 후에 시외사업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 19 조에 의하여 이용권을 양도·승계하는 경우에는 9 개월이 지나지 않아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③ 변경신청 및 등록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외전화 사전선택제 업무처리지침에 따릅니다.
④ 시내사업자는 시외전화사전선택제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선택등록센터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 32 조(책임의 한계)

케이티의 귀책사유로 신청서의 내용과 다르게 변경등록되었거나 또는 지연등록하여 계약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제 27 조의 정하는 바에 따라 배상합니다.

제 8 장 번호이동성

제 33 조(번호이동성)

① 제 22 조 제 1 항 제 5 호에 해당하는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번호회수 대상으로 분류된 번호는 번호이동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② 번호이동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번호이동 완료후 신규사업자 (이하 "변경후 사업자"라 합니다)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1 개월 이상 요금체납 시 번호이동 신청이 불가합니다.
③ 계약자는 번호이동등록수수료를 변경후 사업자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④ 번호이동에 따른 이용조건과 요금 등은 변경후 사업자가 정한 이용약관을 적용합니다.
⑤ 계약자는 신규가입일 또는 최근 번호이동일 로부터 6 개월이 경과해야 사업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⑥ 시내사업자는 번호이동 확인에 필요한 계약자의 정보를 번호이동성 관리 센터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⑦ 번호이동성 신청 및 등록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내전화서비스 등 번호 이동성 운영지침'을 따릅니다.

제 34 조(책임의 한계)

케이티의 귀책사유로 불법 변경되어 계약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제 27 조에서 정하는 것에 따라 배상합니다.

제 9 장 원폰(DU:)서비스

제 35 조(원폰(DU:)서비스)

① 원폰(DU:)서비스는 원폰단말기(DU:(폰))와 무선접속장치(DU: AP)를 이용하여 음성 또는 데이터 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게 하는 서비스로서, 원폰(DU:) 서비스로 이용 가능한 서비스는 이동전화서비스, 일반전화서비스, DU:무선인터넷서비스가 있습니다.

② 원폰(DU:)서비스의 품질은 주파수 간섭, 무선접속장치(DU:AP) 설치장소, 기타 사용환경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③ DU:무선인터넷서비스는 시범서비스 기간 동안에는 무료로 제공하며, 상용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가입절차, 이용요금, 손해배상 등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정하여 이 약관에 반영합니다

제 36 조(약관의 적용)

① 원폰(DU:)서비스에 대해서는 이 약관의 규정을 적용하며, 원폰(DU:)서비스로 제공하는 개별 서비스에 대해 서는 해당 서비스의 이용약관, Let's 010(이하"KT-PCS"라 함.)서비스 이용약관, 전기통신서비스이용기본약관, 케이티인터넷서비스 이용약관을 적용합니다.

②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구매/임대계약서 등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 37 조(원폰 단말기(DU:(폰))

원폰단말기(DU:(폰))의 판매방법, 유지보수 등 기타 모든 사항은 KT-PCS 약관이 정하는 것에 따릅니다.

제 38 조(무선접속장치(DU:AP))

① 무선접속장치(DU:AP)는 이용자가 구입 또는 임차하여 직접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케이티에서 방문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가 케이티에서 구입한 무선접속장치(DU:AP)의 유지보수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케이티에서 유지보수 접수를 대행할 수 있으며, 이를 접수한 후, 유지보수의 의무가 있는 제조사를 통해 신속히 조치합니다.

③ 케이티로부터 임차한 무선접속장치(DU:AP)의 고장 또는 기기이상 등으로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케이티는 그 무선접속장치(AP:)를 수리 또는 교환하여 줍니다. 다만,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된 경우에는 수리 또는 교환에 소요되는 실비를 당해 이용자에게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제 39 조(권리 및 의무)

① 케이티는 이용자에게 원폰(DU:)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② 케이티는 원폰서비스의 KTF 이동전화요금과 케이티 시내전화요금을 통합과금하지 않습니다. 다만, 케이티 시내전화요금과 KT-PCS 요금의 합산청구는 예외로 합니다.

③ 케이티는 이용자에게 무선접속장치(DU:AP) 구입비용(단말기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보조하지 아니하며, 판매조건으로 일체의 의무사용 기간을 설정하지 않습니다.

④케이티는 원폰단말기(DU:(폰)) 또는 무선접속장치(DU:AP) 판매시 그 이용방법, A/S, 이용자 불만 처리방법 및 절차 등 이용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이용자에게 고지합니다.

⑤ 개별 구매할 수 있는 전기통신역무에 대해 서비스를 결합판매의 방식으로만 구매하도록

강요하지 않습니다.
⑥이용자는 케이티로부터 임차한 무선접속장치(DU:AP)를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임의로 분해하거나 그 기능을 저하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 40 조(손해배상)

① 이동전화서비스,일반전화서비스 등 개별적인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계약자에 대한 손해배상은 해당 개별 서비스의 이용약관이 정하는 것에 따릅니다.
② 케이티는 원폰(DU:)서비스를 이용한 일반전화서비스가 이동전화서비스로 연결되어 이용요금이 부당하게 부과된 경우에는 이용자의 청구에 의하여 일반전화 서비스 요금과 이동전화 서비스 요금의 차액을 배상합니다.
③ 케이티는 이용자가 케이티로부터 임차한 무선접속장치(DU:AP)의 고장 등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이용자가 케이티에 통지한 때(그 전에 케이티가 이 사실을 안 경우에는 알게 된 때)로부터 6 시간이상 일반전화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여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를 배상합니다.
④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용자는 손해배상의 사유 및 청구금액 등을 기재한 서면을 케이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제 1 항 내지 제 4 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 케이티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1. 이용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부분
   2. 이용자가 직접 구입한 원폰단말기(DU:(폰)) 또는 무선접속장치(DU:AP)의 불량으로 발행한 경우
   3.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제 41 조(동등접속)

① 케이티의 시내전화 또는 인터넷서비스 계약자가 다른 이동통신사업자의 원폰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케이티는 해당 계약자에 대하여 DU:무선인터넷서비스 또는 시내전화의 이용상 케이티의 원폰(DU:)서비스 이용자와 동등한 접속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② 케이티의 인터넷서비스 계약자 중에서 다른 시내전화 사업자의 원폰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도 케이티의 DU:무선인터넷 서비스의 이용상 케이티의 원폰(DU:)서비스 이용자와 동등한 접속을 제공합니다.
③ 타사업자의 원폰서비스 이용자는 케이티의 DU:무선인터넷 사이트를 케이티의 원폰서비스 이용자와 동등하게 접속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사이트 접속을 위해 필요한 가입자 인증 등은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해결한 후 제공합니다.
④ 제 1 항 내지 제 2 항의 경우에 해당하는 계약자에게 케이티 원폰(DU:)서비스 이용자와 무선접속장치(DU:AP)에 대하여 동등한 가격 조건을 적용합니다.

제 10 장 전화부가서비스

제 42 조(발신번호표시서비스)

① 발신번호표시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서비스가 가능한지 미리 케이티에 확인한 후 청약하여야 합니다.
② 발신번호표시방지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상대방 전화번호 앞에 '169'번을 누르거나, 주식회사 케이티에 가능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 교환기에 등록하고 단말기에서 특정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③ 익명전화수신거부서비스는 발신번호표시 서비스 계약자에게 제공하며, 이용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단말기에서 특정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④ 착신통화전환서비스와 동시 이용시 주식회사 케이티의 신호방식에 따라 최초 발신번호 또는 착신한 전화번호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⑤ 112, 113 등 특수번호는 발신번호표시방지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⑥ 데이콤/온세통신시외전화의 ACR 설치가입자는 발신번호 표시 방지시 표시방지식별번호 (169) 다음에 사업자의 식별번호를 눌러야 합니다.

제 43 조(메세지서비스)
① 메세지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주식회사 케이티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② SMS 송·수신은 주식회사 케이티에 등록한 SMS 단말기간 또는 SMS 단말기와 이동전화 등과 가능합니다. 다만, 이동전화는 주식회사 케이티와 연동한 경우에 한합니다.
③ 메시지 수신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 몇 차례에 걸쳐 다시 발신 할 수 있습니다.
④ 발신번호표시 서비스와 동시 이용하는 경우에는 자동수신이 가능하나 발신번호표시 서비스와 동시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화를 받아야만 수신이 가능합니다.
⑤ 서비스 이용자의 이용형태에 따라 서비스가 불가하거나 서비스 제공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⑥ 비밀번호 변경 또는 메시지 수신거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등록 시 신청하거나 서버에 접속하여 지정 또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
⑦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등 관련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스팸(불법 스팸)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용자는 회선당 1 일 1,000 건을 초과하는 메시지(SMS)를 전송할 수 없습니다. 1 일 1,000 건을 초과하여 메시지를 전송할 경우 주식회사 케이티는 1 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메시지발송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이 제출하는 증빙서류 등을 통해 회사가 불법스팸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1 일 1,000 건 이상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제 44 조(통화중 자동연결서비스)
① 통화중 자동연결 서비스는 착신자가 통화중인 경우 "통화중소리(Busy Tone)"대신 음성안내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착신자의 통화가 종료된 후에 자동으로 호를 연결하는 서비스입니다. 다만 부재중 또는 통화중의 상태가 30 분 이상 지속되는 등의 경우에는 자동연결이 되지 아니합니다.
② 이용자가 동 서비스 제공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객센터(100 센터)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제 45 조(가입자정보제공) (2016. 1. 1 일 신규 가입고객부터 제공 중단)
① 케이티는 신규로 가입한 고객이 케이티 시외전화를 선택하고, 114 번호안내를 희망하는 경우 시외전화 사전선택제 안내를 위해 해당 고객의 정보(가입자명, 전화번호)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외전화사업자들에게 제공 할 수 있습니다.
   가. 제공대상 : 현재 시외전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간통신사업자(데이콤, 온세통신, 하나로텔레콤, SK 텔링크)
   나. 제공주기 : 당월 시내전화가입자에 대해 익월 제공
② 제 1 항의 가입자 정보는 시외전화 사전선택제 안내에만 이용하며 제공 받은 날로부터 1 개월 경과 후 파기합니다.

제 46 조(발신번호 안내서비스)
발신번호 안내서비스(이하 "알림콜)는 부재중 또는 통화중에 걸려온 발신전화번호를 지정된 이동전화나 유선전화(SMS 수신가능)로 단문메시지(SMS)를 통해 안내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제 47 조(번호유지 서비스)
번호유지 서비스는 동일 통화권내에서 설치장소를 변경하여 수용국이 변경되더라도 기존 전화번호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제 48 조(의무약정 보조금 설정)

① 회사는 고객의 유선전화 단말기 구입비용을 지원 (이하'보조금')하는 조건으로 일정기간 의무사용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36 개월을 초과하여 의무사용기간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③ 회사는 의무사용기간의 설정, 보조금액에 관한 사항은 고객과 회사간 개별 약정에 따릅니다.

부 칙('95. 4.21 공시 제 17 호)

이 약관은 공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95.11. 1 공시 제 34 호)

이 약관은 공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96. 3.11 공시 제 7 호)

이 약관은 공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96. 5. 1 공시 제 12 호)

이 약관은 공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96. 6.29 공시 제 21 호)

이 약관은 공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96.11.30 공시 제 39 호)

이 약관은 1996 년 12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97. 4. 1 공시 제 11 호)

이 약관은 1997 년 4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97. 8.30 공시 제 30 호)

이 약관은 1997 년 9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97.10. 1 공시 제 34 호)

이 약관은 1997 년 10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97. 11. 1 공시 제 37 호)

① (시행일) 이 약관은 공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② (경과조치) 이 약관 시행전"시외전화사전선택제추진위원회"의 공고에 의하여 사업자를 선택한 것은 이 약관에 의해 선택한 것으로 봅니다.
③ 전항에 의한 선택의 경우 1997 년 11 월 16 일부터 3 월이내에는 1 회에 한하여 선택 지정일로부터 1 월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무료로 사업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부 칙('97.12.30 공시 제 48 호)

이 약관은 1998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98. 3. 2 공시 제 4 호)

이 약관은 1998 년 3 월 10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98. 3.18 공시 제 7 호, '98. 3.21 공시 제 8 호)

이 약관은 1998 년 4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98.6.10 공시 제 23 호)

이 약관은 1998 년 6 월 18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98.8.7 공시 제 36 호)

이 약관은 1998 년 8 월 15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98.9.7 공시 제 39 호)

① (시행일) 이 약관은 1998 년 9 월 15 일부터 시행합니다.

② (경과조치)

1. 이 약관 시행전 종전의 약관에 따라 가입한 전화는 제 4 조 제 1 항 제 3 호에 의한 설비비부담형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
2. 이 약관 시행전에 종합정보통신서비스(ISDN)를 일반전화로 변경하여 사용중인 경우에는 계약해지 시까지 제 4 조 제 1 항 제 3 호에 의한 설비비부담형 전화의 기본료를 적용합니다.
3. 이 약관 시행후 99 년 12 월 31 일까지 한국통신은 설비비부담형 전화의 전화국별 계약해지 건수가 전년도 일평균 계약해지 건수의 3 배이상 폭주하여 현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환일로부터 6 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기예금 금리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반환설비비의 지급을 보류할수 있습니다.

부 칙 ('98.11.18 공시 제 51 호)

① (시행일) 이 약관은 1998 년 11 월 26 일부터 시행합니다.

② (경과조치) 이 약관 시행전 가입비납입형 전화를 선택가입한 계약자가 이 약관 시행일로부터 30 일이내에 설비비부담형 전화로 변경선택 신청하는 경우 한국통신은 이를 변경승낙할 수 있습니다.

부 칙 (1998.12.11 공시 제 55 호)

①(시행일) 이 약관은 공시일로부터 7 일 경과후 시행합니다.

②(경과조치) 이 약관 시행전까지 한국통신에접수한 시외전화사전선택 변경등록신청서는 종전의 약관을 적용합니다.

부 칙 (1998.12.24 공시 제 59 호)

이 약관은 1999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1999.3.8 공시 제 9 호)

①(시행일) 이 약관은 1999 년 3 월 15 일부터 시행합니다.

②(요금감면) 이약관에 의한 복지용전화의 시외통화료 감면이용한도액 확대는 1999 년 3 월 사용분부터 적용합니다.

부 칙 (1999.3.26 공시 제 12 호)

①(시행일) 이 약관은 1999 년 4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②(종류변경) 이약관 시행과 동시에 서비스가 폐지되는 행정통신회선은 이 약관 시행 후 1 월 이내에 설비비부담형 전화로 가입종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부 칙 (1999.7.23 공시 제 32 호)

①(시행일) 이 약관은 1999 년 7 월 26 일부터 시행합니다.

②(경과조치) 이 약관에 의한 다량이용할인 적용기준 변경은 1999 년 7 월 사용분부터

적용합니다.
③(종류변경 준용) 이 약관 시행일로부터 항만장기전화는 가입비납입형 전화로 가입 종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항만전화서비스 폐지후 1 개월이내까지만 적용합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약관은 1999 년 8 월 17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약관은 1999 년 10 월 20 일부터 시행합니다.
②(경과조치)이 약관 시행일 이전에 청약 이용중인 항만단기전화 이용자의 요금은 종전 요금을 적용 합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약관은 1999 년 12 월 09 일부터 시행합니다.
②(종류변경준용)이 약관 시행일로 부터 발신전용휴대전화(CT-2) 서비스는 가입비납입형 전화로 가입종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종류변경 기간은 CT-2 서비스 폐지에의한 가입자 보상기간까지만 적용합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약관은 2000 년 1 월 8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약관은 2000 년 2 월 3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약관은 2000 년 3 월 15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약관은 2000 년 4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약관은 2000 년 5 월 15 일부터 시행합니다. 단, 착신자요금부담통화료는 2000. 7.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약관은 2000 년 6 월 16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약관은 2000 년 9 월 20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약관은 2000 년 10 월 16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약관은 2000 년 12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약관은 2000 년 12 월 26 일부터 시행합니다. 단, 단기전화는 2001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②(단말기기의 설치) 이 약관 시행전에 청약한 일반단기전화는 종전약관을 적용합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약관은 2001 년 3 월 16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약관은 2001 년 4 월 15 일부터 시행합니다.
②(경과조치) 이 약관 변경 전에 신규 가입계약을 체결한 계약자는 변경 전 제 4 조 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전화 개통월로부터 6 월 이내에 가입종류의 변경선택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변경승낙할 수 있습니다.

부 칙 (공시 2001-7 호)

①(시행일) 이 약관은 2001 년 5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약관은 2001 년 5 월 2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약관은 2001 년 5 월 25 일부터 시행합니다.
②(특별요금적용)FIFA 컨페더레이션스컵대회와 관련되어 제공되는 통신요금은 별도로 약정한 요금을 적용합니다.
③(기간 및 대상자)관련 적용요금은 국내.외방송사, 언론사 및 대회관련기관을 대상으로 대회기간((2001.5.25~2001.6.12)동안 적용합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약관은 2001 년 9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약관은 2001 년 11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약관은 2001 년 11 월 28 일부터 시행합니다.
②(특별요금적용)『2002 FIFA WORLD CUP KOREA/JAPAN』와 관련되어 제공되는 통신요금은 별도로 약정한 요금을 적용합니다.

③(기간 및 대상자) 관련 적용요금은 국내.외방송사, 언론사 및 대회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월드컵본선조추첨(2001.11.28~12.2) 및 본대회(2002.5.13~2001.7.6)동안 적용합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약관은 2002 년 3 월 22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약관은 2002 년 6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약관은 2002 년 8 월 12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약관은 2002 년 9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②(특별요금적용)『2002 부산아시아경기대회』와 관련되어 제공되는 통신요금은 별도로 약정

한 요금을 적용합니다.
③(기간 및 대상자) 관련 적용요금은 국내.외방송사, 언론사 및 대회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본대회(2002.9.17~2002.10.15) 동안 적용합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약관은 2003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약관은 2003 년 6 월 3 일부터 시행합니다.
②(경과조치) 이 약관 시행전 일반전화이용약관으로 계약한 가입자는 현 약관으로 가입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일반전화 약관을 준용하는 타 서비스약관은 별도의 변경없이 시내 전화이용약관을 준용하고 추후 약관변경사유 발생시에 변경합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약관은 2003 년 6 월 30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약관은 2003 년 7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약관은 2003 년 11 월 24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약관은 2004 년 4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약관은 2004 년 6 월 21 일부터 시행합니다.
②(동등접속 이행)케이티는 다른 사업자도 동등하게 원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원폰서비스 동등접속 이행계획서"를 성실히 준수합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약관은 2004 년 7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약관은 2004 년 9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약관은 2004 년 10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약관은 2004 년 12 월 9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약관은 2004 년 12 월 16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약관은 2005 년 2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②(계약의 승계) 종전 리빙넷이용약관에 의하여 계약자에게 이미 행한 처분, 절차, 결정 및 계약자에 관한 권리와 의무는 이 약관에 그대로 승계됩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약관은 2005 년 4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약관은 2005 년 5 월 16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약관은 2005 년 5 월 24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약관은 2005 년 7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05 년 8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약관은 2005 년 11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②(특별요금적용)『APEC 2005 KOREA』와 관련되어 제공되는 통신요금은 별도로 약정하여 국내.외방송사, 언론사 및 행사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본 행사 기간 (2005.11.1~2005.11.20) 동안 적용합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약관은 2005 년 8 월 24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약관은 2005 년 11 월 7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약관은 2006 년 3 월 2 일부터 시행합니다.
단, 통화중 자동연결 서비스는 2006 년 3 월 27 일부터 시행 합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약관은 2006 년 3 월 15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약관은 2006 년 4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약관은 2006 년 6 월 15 일부터 시행합니다.
단, 알림콜 서비스는 2006 년 6 월 26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약관은 2006 년 7 월 5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약관은 2006 년 8 월 15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약관은 2006 년 9 월 25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약관은 2006 년 11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약관은 2006 년 12 월 12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약관은 2007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약관은 2007 년 3 월 28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약관은 2007 년 5 월 4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약관은 2007 년 6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약관은 2007 년 6 월 15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약관은 2007 년 7 월 2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약관은 2007 년 10 월 10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약관은 2007 년 11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약관은 2007 년 11 월 2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약관은 2007 년 11 월 29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약관은 2007 년 12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약관은 2007 년 12 월 27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①(시행일)이 약관은 2008 년 2 월 14 일부터 시행합니다. 단, 프리형요금제는 2008 년

4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①(시행일)이 약관은 2008 년 2 월 25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①(시행일)이 약관은 2008 년 4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①(시행일)이 약관은 2008 년 5 월 8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①(시행일)이 약관은 2008 년 5 월 19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①(시행일)이 약관은 2008 년 7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단, 알뜰형요금제 중 이동전화와의 결합요금서비스는 2008 년 7 월 중 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①(시행일)이 약관은 2008 년 11 월 17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①(시행일)이 약관은 2008 년 12 월 7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약관은 2008 년 12 월 8 일부터 시행합니다.
②2007 년 11 월 27 일부터 2008 년 12 월 7 일까지 모집한 '통화당 무제한요금제(아래 참조)'는 2008 년 12 월 8 일 이후 신규가입을 중단함
(* 단, 2008 년 12 월 7 일까지 가입한 가입자는 기존 요금제도를 유지함)
< 통화당무제한 요금제 (기존) >
가. 상품개요 : 일반전화 가입자가 월정액을 부담하고 시내 또는 시외 통화를 통화당 42.9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시간제약 없이 무제한 이용 가능
나. 이용요금 (부가가치세 포함)

월정액	통화료	대상통화
3,300 원	42.9 원/호	시내 및 시외

부 칙

①(시행일) 이 약관은 2008 년 12 월 3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약관은 2009 년 2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약관은 2009 년 2 월 23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약관은 2009 년 4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약관은 2009 년 4 월 8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약관은 2009 년 6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단, QOOK&SHOW 솔로 서비스는 2009 년 9 월 1 일부터, QOOK&SHOW 소호 서비스는 2009 년 7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약관은 2009 년 6 월 15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약관은 2009 년 10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약관은 2009 년 12 월 10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약관은 2010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약관은 2010 년 3 월 30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약관은 2010 년 7 월 18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약관은 2010 년 11 월 30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약관은 2010 년 12 월 3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약관은 2011 년 1 월 1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약관은 2011 년 4 월 29 일부터 시행합니다.(미디어 CID 서비스)

부 칙

①(시행일) 이 약관은 2011 년 6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약관은 2011 년 8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약관은 2012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약관은 2012 년 2 월 28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약관은 2012 년 5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약관은 2012 년 6 월 15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13 년 1 월 25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13 년 4 월 30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13 년 9 월 30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13 년 6 월 2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14 년 9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14 년 11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14 년 11 월 7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15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15 년 5 월 25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15 년 7 월 6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15 년 11 월 2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15 년 11 월 13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16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16 년 1 월 4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16 년 1 월 25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16 년 3 월 13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16 년 3 월 23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16 년 4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16 년 5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16 년 5 월 12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16 년 5 월 18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16 년 7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16 년 9 월 3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16 년 10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16 년 11 월 22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17 년 2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17 년 4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17 년 8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17 년 9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17 년 9 월 5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17 년 9 월 12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17 년 10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17 년 12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18 년 1 월 12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18 년 1 월 3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18 년 2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18 년 4 월 26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18 년 7 월 13 일부터 시행합니다.
단, 통신사업자의 상담 또는 안내로 사용되는 100(KT), 101(LGU+), 106(SKB)에 대하여 하는 통화에 대한 통화료 100% 감면은 2018 년 6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18 년 7 월 3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18 년 9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18 년 11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18 년 11 월 9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18 년 11 월 30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19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별표 1]

요 금 표

1. 기본서비스료

가. 기본료

(부가가치세 포함)

급 지 별	1 전화마다 월 요율	
	가입비납입형	설비비부담형
6 급지 이하	3,300 원	2,750 원
7 급지	4,400 원	3,410 원
8 급지 이상	5,720 원	4,070 원

나. 통화료

(1) 시내통화료

(가) 요 율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평 상 시 간	할 인 시 간
요 율	180 초마다 42.9 원	258 초마다 42.9 원

(2) 기타 통화료

(부가가치세 포함)

종 류	적 용 기 준		
무선호출서비스 이용	해당 구간에 관계없이 시내통화료		
무선데이터사업자 서비스이용	해당구간의 시내통화료 (기타 이용조건은 해당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시내전화에서 이동전화로 건 통화	평상시간	할인시간	특별할인시간
	15.950 원/10 초	15.037 원/10 초	14.157 원/10 초
시내전화에서 070 인터넷전화로 건 통화	53.9 원/3 분		
시내전화에서 시내번호를 사용하는 인터넷전화로 건 통화	"나"항 (1)의 시내통화료 요율적용		
주파수공용통신과의 통화	10 초마다 20.9 원		
해상이동전화와의 통화	해상이동전화이용약관의 일반요금		
글로벌스타와의 통화	10 초당 308 원		

※ 해당구간 : 전화의 설치장소가 속한 통화권과 해당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설비의 설치 장소가 속한 통화권간의 통화구간

(3) 주요통신서비스통화료 : 해당구간 시내통화료의 90%(부가가치세 별도)

다. 통화료 적용시간

대상서비스		평상시간	할인시간	특별할인시간
시내통화	평일	08:00~21:00	00:00~08:00 21:00~24:00	-
	공휴일	-	00:00~24:00	-
시내전화에서 이동전화로 건 통화	평일	08:00~21:00	06:00~08:00 21:00~24:00	00:00~06:00
	공휴일	-	06:00~24:00	00:00~06:00

※ 공휴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2. 부가서비스료

가. 일반 부가서비스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적 용		요 금
착신통화전환 통화중대기 지정시간통보	1 종목 1 종목 추가마다		월 1,100 원 월 550 원
단축다이얼, 직통전화 부재중안내, 삼인통화 대표번호, 발/착신전용 국제전화안내차단서비스	무 료		
번호유지 서비스	1 전화마다 1 회 요금		4,400 원
통화중 자동연결	-		별도 이용료 없음 ※ 자동연결 완료된 호에 대하여 시내,시외전화 이용약관의 해당구간 이용요금 적용
월구전화	1 전화마다		ㅇ 시내 : 39,490 원(1~6km), 41,030 원(7~12km), 42,570 원(13km 이상) ㅇ 시외 : 99,110 원(~10km), 173,360 원(~30km), 242,000 원(~50km), 382,250 원(~100km),433,510 원(~200km), 485,870 원(~300km),524,,590 원(~400km), 550,880 원(401km 이상)
타인사용 증설전화	1 전화마다	MDF 사 용	월 기본료 + 22,000 원
		MDF 미사용	월 기본료와 동일

※ 삼인통화서비스 이용자는 삼인통화 참여자에게 다자간 통화임을 알려야 하며, 다른 사람의 통화내용을 몰래 청취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음

나. 통화연결음

(1) 기본요금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링고홈	링고비즈	링고비즈플러스
월 이용료	1,100 원	2,420 원	4,400 원
추가요금	홈링 550 원(1)	가입불가	플러스링 2,200 원(2)

1

(1) 링고홈은 kt 이동전화와 음원 공유/설정이 가능("홈링")하며, 이동전화 회선 당 추가 요금이 부과됨
- 가입조건 : 동일명의 및 가족명의 회선에 한함(1 회선)

(2) 링고비즈플러스는 kt/skt(3) 이동전화와 음원 공유/설정이 가능("플러스링")하며, 회선 당 추가요금이 부과됨(최대 100 회선)

(3) 타 이통사와의 제휴 종료 시, 해당 서비스 제공이 불가하며, 위와 같은 경우 1 개월전까지 고객에 SMS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고지함

※ 2005.2.1 일 이전 Familly 가입자는 월이용료 900 원이며, DJ 가입자는 Home 으로 통합

※ 2014.10.31 이전 링고홈, 링고비즈플러스 가입자는 홈링, 비즈플러스링, 플러스링 가입 불가

※ 2018.11.9 일부터 비즈플러스링 신규가입은 중단되며, 2018.11.8 일 이전 가입한 비즈플러스링은 지속 이용가능(요금, 1,650 원/회선)하나, skt 이동전화와 음원 공유/설정은 불가 함

(2) 구내전화 월이용료 : 내선 1 회선 당 링고비즈, 링고비즈플러스 월 이용료 적용

(3) 음원제작비(정보이용료; 별도청구)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음원명	제작비	비고
스튜디오제작	기본형	22,000 원/건	고객이 제안하는 멘트 제작
	기본형 플러스	55,000 원/건	중급성우 이용한 음원 제작
	고급형	275,000 원/건	고급성우 이용한 음원 제작
	VIP 형	별도 협의	스타급 연예인 등을 통한 음원제작
	선택형	5,500 원/건	KT 가 구비한 음원 제공
	실속정액형	1,100 원/월	KT 가 제공하는 음원내에서 자유로운 변경가능 (휴무 시간대 특화음원)
온라인 비즈	TTS / Self Plus	5,500 원/건	TTS : 웹 입력 TXT 를 음원으로 변경 Self Plus : 웹 상호입력, KT 제작멘트 사용
	Biz Voice	1,650 원/건	고객의 목소리와 선택한 배경음원을 녹음하여 믹싱 제작
온라인 홈	뮤직링 음원	770 원/건	최신곡, 가요 등 원하는 음악 설정
	Self 링 음원	1,650 원/건	고객이 직접 통화연결음 제작/설정

※ 상기 정보이용료는 CP(Contents Provider)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링고비즈플러스/링고홈의 이동전화 음원 공유기능 이용 시 이동전화에 별도의 음원제작비가 부과되지 않음

※ 실속정액형은 2014.11.1 부터 신규가입 중단

※ 링고비즈 가입시 기본형 음원 제작비 최초 1 회 무료제공

※ 링고비즈플러스 가입시

① 기본형 음원 2 개 및 기본형 플러스 음원 1 개를 동시 제작시 음원 제작비 최초 1 회 무료 제공
② 선택형, TTS/Self Plus 및 Biz Voice 무료 제공

(4) 다량이용회선 이용료 할인(동일청구계약)

신청수	5 이상~ 50 미만	50 이상~ 100 미만	100 이상 ~ 300 미만	300 이상~ 1,000 미만	1,000 이상
할인율	10%	20%	30%	40%	50%

(5) 동시 다량청약 할인
ㅇ 가맹점(Franchise)등의 사업자번호와 명의자가 다른 가입자가 동시 다량 서비스 청약 시 할인율 적용

신청수	100 이상~ 300 미만	300 이상~ 500 미만	500 이상
할인율	10%	20%	30%

(6) 네임링고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A 형	B형	비고
제공멘트 수	최대 100개	최대 500개	통화연결음(링고) 가입자에 한함
월 이용료	550원	1,650원	

※ 다량 이용회선 이용료 할인 및 동시 다량 청약 할인은 제공되지 않음
※ 네임링고 B 형은 2014.11.1 부터 신규가입 중단

다. 발신번호표시서비스(CID)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요 율	계약자 유형
영업용	월 3,080 원	-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관청]
비영업용	월 1,650 원	- [개인]
발신번호표시방지	무료	-
익명전화수신거부	무료	-

라. 메세지서비스(SMS)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요율		비 고
메시지(SMS) 송신	KT 유선/인터넷 전화로 송신	건당 11 원		80 Byte(한글 40자 또는 영문 80자)까지 1건으로 함
	타사업자 유선/인터넷/이동전화로 송신	1~500,000	16.5 원	
		500,001~1,000,000	15.4 원	
		1,000,001~2,000,000	14.3 원	
		2,000,001~5,000,000	13.2 원	

		5,000,001~10,000,000	12.1 원	
		10,000,001 이상	11 원	
E-mail 송신		건당 일반전화 시내통화요금		동보송신은 3건까지 1건요금
Fax 송신		건당 일반전화 시내통화요금		양식변환비용 포함
등기 SMS		기본형	11 원/건	메시지(SMS)송신료는 별도 부과
		정액형	550 원/월	
SMS 착신전환		부가사용료	550 원/월	착신통화전환, 패스콜 가입자는 부가사용료 면제
		이용료	16.5 원/건	
Living SMS		880 원/월		생활관련 정보를 SMS으로 가입자에게 제공

마. 알림콜 서비스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이용료
기본료	1,100원/월 (단, 통화연결음, CID가입자가 알림콜 가입시 월 550원 적용)
SMS 이용료	시내전화이용약관의 단문메시지(SMS) 서비스 이용요금 적용 (단, SMS 월 20건까지 무료 제공)

※ 단문메시지(SMS): 부재/통화중에 걸려온 알림콜 문자메시지

바. 멀티넘버서비스

❍ 기본 서비스 : 시내전화서비스 이용 고객이 이용 중인 전화번호 외에 추가 전화번호를 부여받아 해당 번호를 착신 전용으로만 이용하는 서비스

❍ 이용조건
- 가입대상 : KT 시내전화 이용 고객
- 멀티넘버 번호가 귀속 부여될 일반 시내전화 회선(이하 '기본전화')이 반드시 필요
- 멀티넘버 번호는 동일 통화권 내의 번호로만 부여되며, 기본전화 1 회선 당 최대 10 개까지 가입 가능
- 기본전화가 이용 중인 상태일 경우에만 멀티넘버서비스 이용이 가능
- 부여된 멀티넘버에 대해서는 제반 계약변경(번호변경, 기본전화 변경, 설치장소 이전, 번호이동, 일시정지(일시이용중단) 등) 불가

❍ 이용요금 : 월 1,100 원 (부가세 포함)
- 월 중 서비스 가입/해지시 이용요금은 일할 계산하여 적용

사. 국제전화 발신제한 서비스

ㅇ 개요 : 자/타사 국제전화 발신차단 서비스
ㅇ 월정액 : 무료

아. 소호부가팩 서비스

(부가가치세 포함)

상품구성	요금
발신번호표시+착신통화전환	발신번호표시와 착신통화전환 서비스 요금을 합한 금액에서 550 원/월 할인한 금액으로 제공

3. 가입비 등 실비

가. 신규가입시 가입비 : 1 전화마다 60,000 원 (부가가치세 포함)

(1) 가입비 약정할인

(가) 결합상품 또는 선택요금제 가입시

ㅇ 개요 : 신규가입시 시내전화가 포함된 결합요금서비스, 전국단일요금제, 정액형요금제, 통화당무제한요금제 중 한 개 이상과 동시 가입하는 경우 약정기간에 따라 가입비를 할인

ㅇ 할인내용

구 분	약정기간	가입비	비 고
할인액	1년	20,000원	약정기간 만료전 해지시 할인반환금 부과
	2년	40,000원	
	3년	60,000원	

ㅇ 할인반환금 산식 : (계약년수-사용년수)*가입비/계약년수

(나) KT Pack 가입시

ㅇ 개요 : 신규가입시 KT 2,3Pack A 형과 동시 가입하는 경우 약정기간에 따라 가입비 및 KT Pack 요금을 할인

ㅇ 할인내용

구 분	약정기간	가입비	KT 2,3Pack A형	비 고
할인액	1년	20,000원	550원/월 (부가가치세 포함)	약정기간 만료전 해지시 할인반환금 부과
	2년	40,000원		
	3년	60,000원		

ㅇ 할인반환금 산식

- 가입비 : (계약년수-사용년수)*가입비/계약년수
- KT Pack : 사용월수(당월제외)*KT Pack 할인액

※ 가입비와 KT Pack 약정 가입 고객에게는 KT 제공 유선전화 단말기의 보조금을 지원(단, 단말기 보조금액, 약정기간내 해지에 따른 단말할인액 반환 등 상세 사항은 고객과 회사간 개별약정으로 정함)

나. 설비비부담형 계약자가 납입한 설비비 및 장치비

(부가가치세 포함)

급 지	1 전화마다						
	4급지	5급지	6급지	7급지	8급지	9급지	10급지
설비비	122,000원	142,000원	162,000원	182,000원	202,000원	222,000원	242,000원
장치비	8,000원	8,000 원	8,000 원	8,000 원	8,000 원	8,000 원	8,000 원

다. 설치장소 이전비 (부가가치세 포함)

이전종류		요 율	비 고
댁내이전		2,860원	1전화마다 1회당 요율
댁외이전 및 타지역 전출	출 동	15,400원	
	무출동	11,000원	

※ 무출동가설 : 계약자가 이전할 장소에 설치되어 있던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경우 등 현장에 출동하지 않고 전화를 설치·개통하는 경우

※ 구외설변 다회선 할인

구분	2~5회선	5회선 초과
구외설변	20%할인/회선	30%할인/회선

라. 시외전화사전선택 변경등록수수료 : 1 전화마다 1,100 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번호이동 등록수수료 : 1 전화마다 2,000 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이용약관 제 28 조에 의한 보증금 : 50,000 원(부가가치세 포함, 가입시 선납)
사. 기타 실비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적 용	요 금
열람료		1 전화마다	220 원
증명료	내방청구	1 전화마다	330 원
	우편청구		550 원
장치비	일반증설	1 전화마다	1,320 원
	일시정지 (일시이용중단)	1 전화마다	면제
	번호변경	1 전화마다	1,650 원
조건부가입구역 선로시설 부담금		80M 까지	무 료
		80~200M 전주 1 본당	110,000 원
		200M 이상	공사 실비

4. 단기전화
가. 단기전화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적 용	요 금
기본료	1 전화마다	일 330 원

통화료	통화료	시내/LM 통화료
	기타통화료	해당약관별 통화료
가입비	1 전화마다	8,800 원

5. 특수번호회선료

가. 시내회선료 : 일반전화 이용요금(가입비,기본료,통화료 등)과 동일

나. 시외회선료 : 일반전화 이용요금(가입비,기본료,통화료 등) + 특수번호회선이용료 (최저이용료+추가회선료)

○ 특수번호 회선이용료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최저이용료	추가회선료	비 고
전국단일콜센터	99만원	6.6만원/회선	추가회선료는 시외회선이 15회선 초과시 추가회선에 대해 적용
콜센터가 2개소 이상인 경우	99만원 - 6.6만원*(콜센터개소-1)	6.6만원/회선	

※ 시내/시외회선수는 광역 통화권별 KT 가입자 비율에 의해 결정

[별표 2]

요금감면 및 할인표

1. 요금감면

가. 전체요금 감면

감 면 대 상	감 면 율
(1) 국가비상사태하에서 재해구호기관이 그 업무수행상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전화	100%
(2) 수해 등으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 자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전화업무취급국이 지원하는 전화	100%

나. 기본료 감면

감 면 대 상	감면율(액)
(1) 일시정지(일시이용중단)중인 전화	70%
(2) 발·착신이 모두 이용정지중인 전화	100%
(3) 이용휴지중인 전화	100%
(4) 약관 제 10 조 1 항제 6 호 내지 제 7 호에 의한 대상자의 복지통신전화	100%
(5) 약관 제 13 조의 [개인]용 복수전화 중 생년월일 상 20 세 미만인 직계자녀가 3 인 이상인 전화 -단, 성년 등 기타 변동사항으로 생년월일 상 20 세 미만인 직계자녀수가 3 인 미만이 되는 때에는 감면 전 요금을 적용함	50%

다. 시내통화료 감면

감 면 대 상		감 면 율
(1) 전보의 접수.조회 전화 및 통신사업자의 상담 또는 안내로 사용되는 100(KT), 101(LGU+), 106(SKB)에 대하여 하는 통화		100%
(2) 화재의 신고 또는 인명의 구호를 요구하기 위하여 소방기관 등의 전화중 케이티가 지정한 전화에 대하여 하는 통화		100%
(3) 범죄사실을 통보하기 위하여 경찰기관의 전화중 케이티가 지정한 전화에 대하여 하는 통화		100%
(4) 케이티가 기계시설 점검을 위하여 시험통화를 한 때의 통화		100%
(5) 보도용 전화		30%
(6) 복지통신 전화	약관 제 10 조 1 항 제 1,2,3,4,5,9,10 호에 의한 대상자의 복지통신전화	50%
	약관 제 10 조 1 항 제 8 호에 의한 대상자의 복지통신전화	30%
	약관 제 10 조 1 항제 6 호 내지 제 7 호에 의한 대상자의 복지통신 전화	월 시내 75 도수 해당금액 면제
(7) 케이티 사정으로 변경된 전화번호의 안내를 변경전화번호자동안내 장치에 의하는 경우 변경되기전의 전화번호에 거는 통화료		100%

※ 약관 제 10 조 1 항제 6 호 내지 제 7 호에 의한 대상자의 복지통신 전화는 KT 시내전화와 시외전화를 함께

사용할 경우 시내.외 통화요금의 총도수에서 150 도수에 해당하는 금액 면제
※ 복지통신 감면은 결합, 약정 등 타 할인과 중복 감면하지 않음

라. 시내전화에서 이동전화로 건 통화료 감면

감 면 대 상		감 면 율
(1) 복지통신 전화	약관 제 10 조 1 항 제 1~10 호에 의한 대상자	1 회선당 월 11,000 원(부가가치세포함) 사용한도 내에서 30% 감면
(2) 무료통화	(삭제)	(삭제)

마. 가입비 등 면제

(부가가치세 포함)

감 면 대 상	감면율
(1) 약관 제 10 조 1 항제 6 호 내지 제 7 호에 의한 대상자의 복지통신전화를 설치하는 경우의 가입비	100%
(2)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재해로 설비가 멸실되어 설치장소를 이전하는 경우의 이전비	100%
(3) 설비비부담형 전화를 동일 설치장소에서 계약해지와 동시에 가입비납입형 전화로 신규가입하는 경우의 가입비	8,000 원
(4) 약관 제 13 조의 [개인]용 복수전화의 가입비 ※ 이용기간 3 개월 이내 해지시 할인 받은 금액을 부과하고, 3 개월 초과시는 할인받은 금액을 부과하지 않음. 단, 일시정지(일시이용중단), 이용휴지 기간은 이용기간에서 제외함	100%
(5) 단기전화를 동일 설치장소에서 계약해지와 동시에 가입비납입형 전화로 신규가입하는 경우의 가입비	8,800 원
(6) 긴급통신용(112,113,119) 및 케이티 사정으로 동일가입구역내 다른 수용구역에 설치하는 경우의 월구전화 장치비 및 부가서비스료	100%
(7) 신규가입에 의한 번호사용 후 3 개월 이내에 번호이용 불편으로 인하여 번호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의 번호변경 장치비 (단, 2017 년 9 월 1 일 이후 신규가입 고객에 대해서는 1 회에 한 함)	100%
(8) 발신번호표시서비스(CID) 불가 교환기에서 가능 교환기로 교체한 날부터 6 개월 내 서비스를 청약하는 경우	1 월분 월정액
(9) on-line 을 통해 다음의 서비스를 가입 신청하는 경우 (가) 시내전화 신규 가입시 가입비 ※ 1 년 이내 해지시 할인받은 금액을 부과함. 단, 이용기간이 6 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는 할인받은 금액의 50%를 부과함 (단, 2017 년 3 월 31 일 이전 가입 고객은 3 개월 이내 해지시 할인받은 금액을 부과)	100%
(10) 시내전화를 3 년 약정으로 신규 가입하는 경우 (가) 시내전화 신규 가입시 가입비 ※ 정지/중단을 제외한 이용기간을 기준으로 3 년 이내에 해지시 할인받은 금액을 부과함. 단, on-line 을 통해 3 년 약정으로 신규 가입한 경우 상기 (9)항의 조건에 따라 할인받은 금액을 부과함	100%

2. 요금할인

가. 다량이용할인

월간 사용도수	100 만도수 초과분	200 만도수 초과분	300 만도수 초과분	적 용 기 준
할인율	5%	10%	15%	(1) 시내통화료에 적용 (2) 요금납입청구서 1 장단위의 월사용액

나. 시내전화에서 이동전화로 건 통화의 선택통화료 요금 할인(부가가치세 포함)

(1) 긴통화할인요금제(2010.1.1 일부터 신규가입 중지)

월정액	호당 통화지속 시간별 할인율		
	3~5 분	5~10 분	10 분 이상
1,100 원	10%	20%	30%

- ㅇ 계약단위 : 1 회선당
- ㅇ 할인율 적용방법 : 통화호당 지속시간에 따라 차등 할인율 적용
  단, 호당 통화지속시간이 3 분 미만이면 할인 미적용

(2) 지정번호할인요금제(2010.1.1 일부터 신규가입 중지)

종류	Single	Twin
월정액	1,100 원	3,300 원
지정번호수	1 개	2 개
할인율	15%	25%

- ㅇ 계약단위 : 1 회선당
- ㅇ 요금산출방법 : 월정액 + 지정한 이동전화번호의 통화료 × (1- 각 할인율) +
  지정번호외 통화료

(3) 더블프리요금제(2010.1.1 일부터 신규가입 중지)

(가) 상품개요 : 가입자의 월평균 통화료의 30%를 추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월평균 통화료의 두배까지 무료통화 제공

(나) 가입대상 : KT 일반전화에 가입한지 6 개월 이상인 가입자로, 동일장소 동일명의(동일 계약유형)의 2 회선 이상 가입자는 모든 회선을 가입해야 함. 단, [개인]가입자는 동일장소 동일명의(동일 계약유형) 2 회선 이상이어도 일부 회선수의 선택적 가입이 가능함

(다) 월평균 통화료 : 6 개월간의 이동전화로 건 통화요금의 월평균
- ㅇ 6 개월 이내 가입자의 경우 가입기간 동안의 청구분 월평균
- ㅇ 단, 지능망(1541 콜렉트콜,패스콜,후불카드,월드폰플러스, 080,0502,미팅콜, 060 전화정보 등)을 이용한 이동전화로 건 통화료는 제외

(라) 월정액 : 월평균 통화료 + 월평균 통화료의 30%
- ㅇ 단, 월평균 통화료가 1,100 원 미만일 경우 월정액을 1,100 원 부과하고 무료통화를 1,650 원까지 제공

(마) 계약의 해지

ㅇ 가입자는 가입기간 중 언제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ㅇ 가입자가 실질적 용도변경 사용 및 공동이용 등으로 악용할 경우 케이티는 직권해지 할 수 있음
ㅇ 동일장소 동일명의(동일 계약유형)의 2 회선 이상 가입자는 1 회선이라도 해지할 경우 나머지 회선도 모두 해지해야 함. 단, [개인]가입자는 동일장소 동일명의 2 회선 이상이어도 일부 회선수의 선택적 해지가 가능함

(4) Big Save 15/20(2010.1.1 일부터 신규가입 중지)

종류	Big Save 15	Big Save 20
월정액	5,500 원	14,300 원
할인율	15%	20%

ㅇ 계약단위 : 1 회선당
ㅇ 요금산출방법 : 월정액 + 월이동전화 총통화료 × (1-각 할인율)

(5) 투넘버 DC(※2004.9.1 일부터 신규가입 중단)

종류	월정액	할인율
투넘버 DC	1,100 원	10%

ㅇ 계약단위 : 1 회선당
ㅇ 할인율 적용방법 : 계약자가 지정한 2 개의 이동전화번호로의 통화료에 대해 할인
ㅇ 요금산출방법 : 월정액 + 지정한 이동전화번호의 통화료 × (1- 각 할인율) + 지정번호외 통화료

다. 맞춤형 정액요금제

(1) 상품 개요 : 가입자의 월평균 통화료에 추가 월정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가입하여 시내전화를 무제한 사용하는 특판요금상품

(2) 특판기간 : '02.9.10 ~ '02.12.9(3 개월)

(3) 가입대상자 : 특판 시행일전 6 월 이상 가입기간이 경과된 시내전화 가입자중 주택용 가입자에 한함. 단, 동일장소의 2 회선 이상 가입자는 모두 가입해야 함

(4) 정보의 제공
ㅇ KT 는 맞춤형정액요금제 가입자에 대하여 최근 3 개월간의 요금정보 (실제통화요금과 정액요금)를 분기별로 제공한다

(5) 계약의 해지
ㅇ 가입자는 가입기간중 언제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2 회선 이상 가입자가 1 회선이라도 해지할경우 나머지회선도 모두 해지함

(6) 직권해지: KT 는 가입자가 다음과 같은 사례 등으로 악용할 경우 직권해지할 수 있다.
ㅇ 실질적 용도변경, 공동이용, 설치장소 변경, 명의변경 등을 통한 악용(텔레마케팅, 자동동보장치, 착신통화전화에 의한 호모집 등)

(7) 월평균 통화료 : 특판 시행전 1 년 청구분 월평균
(단, 1 년이내 가입자의 경우 가입기간 동안의 청구분 월평균)

(8) 추가 월정액 (부가가치세 포함)

월평균 통화료	1.1 만원 미만	1.1 만원 이상~ 2.2 만원 미만	2.2 만원 이상~ 3.3 만원 미만	3.3 만원 이상~ 5.5 만원 미만	5.5 만원 이상
추가 월정액	1,100 원	1,650 원	2,200 원	3,300 원	5,500 원

라. 부가서비스 요금할인 (2014.11.1 부터 신규가입 중단)

(1) 할인내용 : 지정된 부가서비스를 동시에 가입할 경우 이용요금 할인

(2) 이용조건 (부가가치세 포함)

상품명		상품내용	요금
3Pack	기본형	발신번호표시+SMS150 건+통화연결음/통화중대기/착신통화전환 중 택 1	월 3,850 원
	B 형	발신번호표시+SMS250 건+통화연결음/통화중대기/착신통화전환 중 택 1	월 4,400 원
	알뜰형	발신번호표시+SMS50 건+통화중대기+통화연결음	월 2,750 원
2Pack	문자형	발신번호표시+SMS 250 건	월 3,850 원
	B 형	발신번호표시+SMS 350 건	월 4,400 원
	기본형	발신번호표시+SMS 100 건	월 2,640 원
	알뜰형	발신번호표시+SMS 50 건+통화중대기	월 2,200 원
천사문자	A 형	발신번호표시+SMS 400 건	월 3,850 원
	B 형	발신번호표시+SMS 400 건+통화연결음	월 4,400 원
프리미엄 SMS Pack		등기 SMS+SMS 착신전화+Living SMS	월 1,100 원
2Pack 플러스		2Pack 문자형 + 프리미엄 SMS Pack	월 4,400 원
3Pack 플러스		3Pack 기본형 + 프리미엄 SMS Pack	월 4,400 원
비고		(가) 통화연결음은 Home 기준이며, Biz 가입자는 월 이용료 1,100 원 추가 (단, Biz 가입자는 천사문자에 가입할 수 없으며, 3Pack 상품 내용에 네임링고는 포함되지 않음) (나) 발신번호표시가 포함된 요금할인 중 가입 회선의 계약유형이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관청]인 가입자는 월 이용료 1,100 원 추가 (다) 가입자가 KT 전화로 보내는 단문메세지(SMS)는 무료 (라) 천사문자는 계약유형이 [개인]인 가입자 중 청각장애인에 한하여 가입 가능하고, SMS 제공 (단, 건수초과 사용분은 11 만원 까지 50%할인 요금 적용) (마) 2Pack C 형은 KT 제공 유선단말기 약정 가입 고객에 한하여 이용 가능 ※ 약정제 내용 : KT 제공 유선전화 단말기와 2Pack C 형을 약정기간(2 년,3 년) 동안 함께 이용하는 경우 단말기 보조금을 지원(단, 단말기 보조금액, 약정기간 내 해지에 따른 위약금 등 상세사항은 고객과 회사간 개별 약정으로 정함)	

※ 2014.11.1 부터 신규가입 중단

마. 신규가입 할인 : 부가서비스 특별 판촉 행사기간 중 신규가입 고객에게 아래와 같이 무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ㅇ 제공대상 : 발신번호표시서비스, 메시지서비스, 통화연결음, 부가서비스 요금할인 상품,

알림콜 기본료

- ㅇ 제공기간 : 특별판촉 기간 중 신규가입 고객에게 가입한 날로부터 1 개월 제공
- ㅇ 제공횟수 : 동일서비스에 대하여 회선당 1 회에 한함

바. My Style 요금제(2010.1.1 일부터 신규가입 중지)

(1) 상품개요 : 가입자의 월평균 통화료에 추가부담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시내전화 월평균 통화료의 2~3 배까지 무료통화 제공

(2) 월평균통화료 : 6 개월간의 시내전화로 건 통화요금의 월평균

- ㅇ 6 개월 이내 가입자의 경우 가입기간 동안의 청구분 월평균
  - 맞춤형정액제 가입자의 경우 가입기간 동안의 실통화료
- ㅇ 지능망 (1588,1541 콜렉트콜, 패스콜, 후불카드, 국제선불카드, 080, 0502, 미팅콜, 060 전화정보 등)을 이용한 통화료는 제외

(3) 추가부담액 및 무료통화 제공 범위 등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추가부담액	무료통화 제공범위	비고
My Style A 형	550 원	월평균 통화료의 2 배	무료통화 초과통화료는 50%할인
My Style B 형	1,100 원	월평균 통화료의 3 배	

(4) 월정액 : 월평균 통화료 + 추가부담액 (500 원 또는 1,100 원)

- ㅇ 단, 월평균 통화료가 1,100 원 미만일 경우 월정액을 1,100 원 부과하고 2,200 원까지 무료통화 제공 (무료통화 초과 통화료는 50% 할인)

(5) 가입대상 : KT 일반전화에 가입한지 6 개월 이상인 가입자로, 동일장소 동일명의(동일 계약유형)의 2 회선 이상 가입자는 모든 회선을 가입해야 함. 단, [개인]가입자는 동일장소 동일명의(동일 계약유형) 2 회선 이상이어도 일부 회선수의 선택적 가입이 가능함

(6) 계약의 해지

- ㅇ 가입자는 가입기간 중 언제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ㅇ 가입자가 실질적 용도변경 사용 및 공동이용 등으로 악용할 경우 케이티는 직권해지 할 수 있음
- ㅇ 동일장소 동일명의(동일 계약유형)의 2 회선 이상 가입자는 1 회선이라도 해지할 경우 나머지 회선도 모두 해지해야 함. 단 [개인] 가입자는 동일장소 동일명의(동일 계약유형) 2 회선 이상이어도 일부 회선수의 선택적 해지가 가능함

사. 孝요금제

(1) 상품개요 : 만 60 세 이상 가입자가 사전에 지정한 자녀에 전화를 걸 경우 그 통화료를 할인하고, 지정된 자녀가 부모에게 전화를 걸 경우에도 그 통화료를 할인

(2) 가입대상 : 만 60 세 이상 KT 시내전화 [개인] 가입자

- ㅇ 가입대상 회선수 : 가입대상 고객별 2 회선
  - KT 에서 제공중인 '별표 2'의 '요금감면 및 할인표'의 해당사항과 중복가입 가능

(3) 착신지정 대상 회선 : 가입자의 자녀 또는 자녀 배우자명의의 KT 시내전화

- ㅇ 착신지정 대상 회선수 : 5 회선(시내 및 시외전화 합산)

(4) 할인율

구 분	시내통화료	비 고

할인율	30%	부모에서 지정자녀에 건 통화료, 지정자녀에서 부모에게 건 통화료

※ 2008.5. 19 일 이전 孝요금제 가입자의 이동전화에 건 통화료 20% 할인은 유지

아. 2008 KT 집전화 웰빙 가족 페스티벌

(1) 개념 : 결혼 또는 출산으로 인한 가족 탄생을 축하하는 프로모션

(2) 적용대상 : 결혼 또는 출산 예정이거나 결혼 혹은 출산 1 년 이내인 신규 가입자

(3) 할인기간 : 2008. 2. 25 ~ 2008. 4. 30

(4) 할인요금 : 가입비 면제(단, 1 개월 이내 해지시 면제받은 금액을 부과하고 1 개월 초과시는 면제받은 금액을 부과하지 않음)

자. 정액형 요금제(A 형, C~F 형은 2010.1.1 일부터 신규가입 중지)

(1) 상품개요 : 월정액(기본료포함)을 납부하는 대신 시내 및 시외・국제통화 또는 시내전화에서 이동전화로 거는 통화에 대하여 일정시간을 무료로 제공

(2) 이용요금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급 지	월정액 (기본료 포함)	무료통화시간	대상 통화	비 고
A형	8~10급지	11,000 원	150분	시내, 시외	무료통화 초과시 표준요금 적용 (단, 국제통화는 해당약관 요금 적용)
	7급지	9,900 원			
	4~6급지	8,800 원			
B형	8~10급지	16,500 원	220분	시내, 시외 및 시내전화에서 이동전화로 거는 통화	
	7급지	15,400 원			
	4~6급지	14,300 원			
C형	8~10급지	27,500 원	440분		
	7급지	26,400 원			
	4~6급지	25,300 원			
D형	8~10급지	38,500 원	660분		
	7급지	37,400 원			
	4~6급지	36,300 원			
E형	8~10급지	82,500 원	1,200분	시내, 시외 국제및 시내전화에서 이동전화로 거는 통화	
	7급지	81,400 원			
	4~6급지	80,300 원			
F형	8~10급지	104,500 원	1,800분		
	7급지	103,400 원			
	4~6급지	102,300 원			

※ 대상통화 중 지능망(1588, 1541 콜렉트콜, 패스콜, 후불카드, 국제선불카드, 080, 0502, 미팅콜, 060 전화정보 등)을 이용한 통화료는 제외함. 단, 국제통화의 경우 국제전화 이용약관을 적용

※'별표 2'의 복지통신전화 및 보도용전화 요금감면 대상자가 정액형요금제 가입 시 '별표 2'의 감면 적용을 제외함

차. 통화당 무제한요금제

(1) 상품개요: KT 집전화 가입자가 추가 월정액 부담시 KT 가입자간 시내전화를 1 통화당 42.9 원으로 무제한 사용 가능

(2) 이용요금 (부가가치세 포함)

월정액	통화료	대상통화
660원	42.9원/호	KT 시내전화 가입자간 시내통화

※ 대상통화 중 지능망(1588, 1541 콜렉트콜, 패스콜, 후불카드, 국제선불카드, 080, 0502, 미팅콜, 060 전화정보 등)을 이용한 통화료는 제외함.

※'별표 2'의 복지통신전화 및 보도용전화 요금감면 대상자가 통화당 무제한요금제 가입 시 '별표 2'의 감면 적용을 제외함

(3) 가입대상 : 동일장소, 동일명의(동일 계약유형)의 2 회선 이상 가입자는 모든 회선을 가입해야 함. 단, [개인] 가입자는 동일장소 동일명의(동일 계약유형) 2 회선 이상이어도 일부 회선수의 선택적 가입이 가능함

(4) 계약의 해지

ㅇ 가입자는 가입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음

ㅇ 동일장소 동일명의(동일 계약유형)의 2 회선 이상 가입자는 1 회선이라도 해지할 경우 나머지 회선도 모두 해지함을 원칙으로 함. 단, [개인] 가입자는 동일장소 동일명의(동일 계약유형) 2 회선 이상이어도 일부 회선수의 선택적 해지가 가능함

카. 청소년용 나만의 전화 요금제(2010.1.1 일부터 신규가입 중지)

(1) 상품개요 : 자녀 거주 KT 시내전화 [개인]가입자가 [개인]용 복수전화 이용시 KT2Pack A 형 또는 KT3Pack A 형을 약정기간 동안 동시 이용하는 경우 가입비, 기본료, KT Pack 요금할인 및 유선전화 단말기 보조금을 지원

(2) 가입대상 : 청소년 (만 5 세 ~18 세) 거주 KT 시내전화 [개인]가입자

ㅇ 가입대상 회선수 : 가입대상 고객별 1 회선

(3) 할인내용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약정기간	가입비	기본료	KT 2,3Pack A형
할인율(액)	2년	100%	100%	550원/월
	3년			

※ 약정(2 년, 3 년)고객에게는 KT 제공 유선전화 단말기의 보조금을 지원(단, 단말기 보조금액, 약정기간내 해지에 따른 단말할인액 반환 등 상세사항은 고객과 회사간 개별약정으로 정함)

(4) 할인반환금 부과 : 약정기간내 해지 시 할인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함

ㅇ KT Pack 할인반환금 산식 : 사용월수(당월제외) * KT Pack 할인액

타. 장기이용 우수고객 우대프로그램(하기 요금은 부가가치세 포함)

(1) 내용 : KT 시내전화 [개인]장기이용고객 중 우수고객에 무료통화를 제공할 수 있음

(2) 우수고객 선정 : 3 년 이상 장기이용고객 중 최근 3 개월 평균요금이 1.1 만원 이상인 고객

(3) 제공 혜택 : 연간 시내 및 이동전화에 건 통화료의 10% 이내 무료통화 제공(단, 최고 3.3 만원 이내에서 시내/시내전화에서 이동전화에 건 통화료 순으로 적용)

(4) 시행시기 : 년 1 회

파. QOOK 집전화 영화요금제(2010.1.1 일부터 신규가입 중지)

(1) 상품개요 : 월정액 부담시 주말/야간 통화 중 시내・외통화 무료 제공 및 시내전화에서 이동전화로 거는 통화 60 분 무료 제공과 매월 영화 이용권 제공

(2) 가입대상 : KT 시내전화 [개인] 가입자 (가입자 기준 1 회선으로 제한)

(3) 이용요금 및 서비스 내용

(부가가치세 포함)

약정기간	무약정	1년	2년	3년
월정액(기본료 포함)	13,750 원	13,200 원	12,100 원	11,000 원
기간별 할인율	0%	4%	12%	20%
제공서비스	・주말/야간통화(시내,외 모든 통화 무료+LM통화 월60분) ・영화이용권 월1매(동반자는 6.6천원 관람)			

※ 대상통화 중 지능망(1588, 1541 콜렉트콜, 패스콜, 후불카드, 국제선불카드, 080, 0502, 미팅콜 등)을 이용한 통화료, 나우콜, 소프트폰 및 114번호안내통화 등은 제외함

※'별표2'의 복지통신전화 및 보도용전화 요금감면 대상자가 이 상품에 가입 시 '별표2'의 감면적용을 제외함

※ 신규가입 시 [별표1] 요금표 3. 가입비 등 실비의 가항 (1)가입비 약정 할인 조항에 따른 가입비 약정 할인 및 약정기간 만료 전 해지 시 할인반환금 부과 적용

※ 이 상품 가입자는 청소년용 나만의 전화 등 일부 상품 동시 이용제약 가능

※ 약정기간 만료 전 해지 시 위약금 산정
: 무약정 월정액*경과월수*(계약기간할인율-사용기간할인율)

※ KT 또는 CGV 의 사정으로 영화 제휴가 종료될 경우 영화 이용권은 제휴 종료 후 6 개월간 제공되며, 그 이후는 표준요금으로 전환 또는 영화이용권이 없는 당 요금제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약금은 미부과함.

하. 집전화 프리 요금제(2010.1.1 일부터 신규가입 중지)

ㅇ 상품개요 : KT 전화 가입자의 시내, 시외 및 시내전화에서 이동전화로 건 요금의 가입전 6 개월 평균 통화료에 추가 월정액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시내 및 시외 통화는 KT 전화 가입자간 무제한, 시내전화에서 이동전화로 건 통화는 6 개월 평균통화료의 2 배를 무료로 제공하는 상품

ㅇ 가입대상 : KT 전화 가입자이며 50 회선까지 가입 가능 (이너텔 가입자 포함)

- KT 전화에 가입한지 6 개월 이상인 가입자로, 동일장소 동일명의(동일 계약유형)의 2 회선 이상 가입자는 모든 회선을 가입해야 함. 단, [개인]가입자는 동일장소 동일명의(동일 계약유형) 2 회선 이상이어도 일부 회선수의 선택적 가입이 가능함

ㅇ 월평균통화료 : 6 개월간의 시내,시외, 시내전화에서 이동전화로건 통화요금의 월평균 (하기 요금은 부가가치세 포함)

- 6 개월 이내 가입자의 경우 가입기간 동안의 청구분 월평균
- 단, 지능망(1541 콜렉트콜, 패스콜, 후불카드, 퉐드폰플러스, 080, 0502, 미팅콜,060 전화정보 등)을 이용한 시내, 시외 및 시내전화에서 이동전화로 건 통화료는 제외
- 시내 및 시외전화 월평균통화료가 1,100 원 미만일 경우 월평균 통화료를 1,100 원 부담하고, 무료통화는 동일하게 이용
- 시내전화에서 이동전화로 건 월평균통화료가 550 원 미만일 경우 무료통화는 1,100 원까지 이용

ㅇ 약정기간별 월정액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월정액	비 고

무약정	1,650 원	- 2~10 회선 가입자 : 550 원 할인 - 11~50 회선 가입자: 1,100 원 할인 (단, 할인은 월평균 통화료 범위내 적용)
1 년 약정	1,100 원	
2 년 약정	550 원	
3 년 약정	면제	

ㅇ 계약의 해지

- 가입자는 가입기간 중 계약 해지는 가능하나, 약정기간 이내 해지 시 할인받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함
  . 할인반환금 산식 : (계약기간할인액-사용기간 할인액) * 경과월수
  * 사용기간 할인액 : 1 년 미만 무약정, 2 년 미만 1 년 약정, 3 년 미만 2 년 약정 월정액을 적용 (가입회선의 약정기간별 적용)
- 가입자가 실질적 용도변경 사용 및 공동이용 등으로 악용할 경우 케이티는 직권해지 할 수 있음
- 동일장소 동일명의(동일 계약유형)의 2 회선 이상 가입자는 1 회선이라도 해지할 경우 나머지 회선도 모두 해지해야 함. 단 [개인] 가입자는 동일장소 동일명의(동일 게약유형) 일부 회선수의 선택적 해지가 가능함

거. 공동약정 요금제

(1) 개 요 : KT 시내전화 서비스 이용을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공동신청 회선수와 개별 가입자의 약정기간에 따라 기본료 할인

(2) 가입대상 : 동일장소, 동일명의(동일 계약유형)의 4 회선 이하 전화 가입자로 모든 회선을 가입해야 함

ㅇ 가입시 동일 집단건물 내 또는 동일 洞단위 내에서 이용중인 시내전화 가입자로 동일장소, 동일명의(동일 계약유형) 계약자의 가입회선은 동시가입 하여야 함

ㅇ 이너텔(이너텔요금제), 별정사업자관리고객,"다회선할인 요금제" 가입자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됨

(3) 가입조건 : 1 년 이상 약정기간을 정하여 30 회선 이상 공동으로 가입 하여야 함

ㅇ 가입자별 약정기간은 별도 약정 가능

ㅇ 약정기간 만료 전, 계약의 연장 요청시 유지 회선수 등급 범위 내에 서 재 약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 의사표시가 없으면 할인은 만료됨

(4) 할인율

약정기간	공동약정 신청한 총 회선		비 고
	30~99 회선	100 회선~	
1 년 약정	20%	30%	약정기간 만료전 해지시 할인 반환금 부과
2 년 약정	25%	35%	
3 년 약정	30%	40%	

ㅇ 약정기간내 설치장소 변경시에도 할인혜택 유지
※ 단, 계약의 연장시 설치장소가 변경된 회선은 할인혜택 불가

ㅇ QOOK 집전화 영화요금제, 정액형요금제, 청소년용 나만의 전화 요금제 가입자는 기본료 중복할인 불가

(5) 계약의 해지

ㅇ 동일장소, 동일명의(동일 계약유형)의 2 회선 이상 가입자는 요금제를 1 회선이라도 해지할 경우 나머지 회선도 모두 해지가 됨

(6) 할인반환금 산식

ㅇ 할인전 요금*(약정기간할인율-사용기간 할인율) * 경과월수

※ 사용기간 할인율

- 30~99 회선 : 1 년 미만 0%, 2 년 미만 20%, 3 년 미만 25%
- 100 회선~ : 1 년 미만 0%, 2 년 미만 30%, 3 년 미만 35%

너. 다량할인 요금제

(1) 개 요 : KT 전화를 이용하는 가입자 통화료의 월 이용등급 및 약정기간에 따라 통화료 할인

(2) 가입대상 및 할인조건

ㅇ 가입대상 : KT 전화, ISDN PRI
(DID, 일반교환회선, 이너텔가입자(이너텔요금제), 별정사업자관리고객, 단기전화 가입자는 가입제외함)

ㅇ 할인조건 : 동일계약자명의의 총 가입회선의 시내전화요금, 시외전화요금, 시내에서 이동전화로 건 요금의 합산액이 5.5 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이상인 경우

(3) 할인 대상요금 및 제외통화

ㅇ 할인 대상요금 : 시내전화요금, 시외전화요금, 시내에서 이동전화로 건 요금

※ 제외통화 : 지능망(1588, 1541, 패스콜, 후불카드, 국제선불카드, 080, 미팅콜, 060 전화정보 등)을 이용한 통화

(4) 할인율 : 이용등급 및 약정기간에 따라 가입자의 할인율은 매월 변경됨

(부가가치세 포함)

이용기간	월 이용등급			
	5.5 만원~	55 만원~	110 만원~	550 만원~
1 년 약정	5%	7%	10%	15%
2 년 약정	7%	10%	13%	17%
3 년 약정	10%	13%	15%	20%

ㅇ 할인율 산정대상 : 월말 할인계약 유지회선(해지, 일시정지(일시이용중단)/이용정지/이용휴지 등 제외)

ㅇ 타 할인 및 복지감면과 중복 적용 불가

(5) 할인반환금

ㅇ 요금제 가입 회선에 대한 약정기간 내 요금제 해지시 해당 회선에 대해 할인반환금 부과

- 할인반환금=할인총액*(1-이용개월수/약정개월수)

※ 단, 1 년 이내에는 할인액 전액을 할인반환금으로 부과

※ 위 산식의 할인총액은 해당 회선에 대한 총 할인액을 의미

※ 회선 별 약정기간은 회선 별 요금제 계약 시작일로 함

(6) 약정기간 만료에 따른 재약정

ㅇ 약정기간 만료 후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1 년 단위로 자동 재약정되며, 재약정 기간 중에는 직전 약정할인의 할인율 적용

더. 다회선할인 요금제

(1) 개 요 : KT 시내전화를 이용하는 가입자의 회선수 등급 및 약정기간에 따라 기본료 할인

(2) 가입대상 : 동일명의(동일 계약유형)의 5 회선(발신회선 기준) 이상 전화 가입자
ㅇ 일반교환회선, 이너텔가입자(이너텔요금제), 별정사업자 관리고객, 단기전화 가입자, "공동약정 요금제"가입자는 가입제외함

(3) 할인율 : 이용등급 및 약정기간에 따라 가입자의 할인율은 매월 변경됨

이용기간	회선수 등급		
	5 회선~	30 회선~	100 회선~
1 년 약정	10%	15%	20%
2 년 약정	15%	20%	25%
3 년 약정	20%	25%	30%

ㅇ 할인율 산정 대상 : 월말 할인계약 유지회선(해지, 일시정지(일시이용중단)/이용정지/이용휴지 등 제외)
ㅇ 타 할인 및 복지감면과 중복 적용 불가

(4) 계약의 해지
ㅇ 최소 회선수 미달하는 경우 할인계약은 모두 해지됨

(5) 할인반환금
ㅇ 요금제 가입 회선에 대한 약정기간 내 요금제 해지시 해당 회선에 대해 할인반환금 부과

- 할인반환금=할인총액*(1-이용개월수/약정개월수)

※ 단, 1 년 이내에는 할인액 전액을 할인반환금으로 부과
※ 위 산식의 할인총액은 이용기간 중 해당 회선에 대한 총 할인액을 의미
※ 회선 별 약정기간은 회선 별 요금제 계약 시작일로 함

(6) 약정기간 만료에 따른 재약정
ㅇ 약정기간 만료 후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1 년 단위로 자동 재약정되며, 재약정 기간 중에는 직전 약정할인의 할인율 적용

러. 보안회선요금제

(1) 상품개요 : 월정액 부담시 휴일/주말/야간 통화중 시내 통화 무료 제공

(2) 가입대상 : KT 시내전화 가입자

(3) 이용요금 및 서비스 내용 (부가가치세 포함)

월정액	대상통화
5,500원	휴일/주말/야간 시간대 KT 시내전화 가입자간 시내통화

※ 대상통화 중 지능망(1588, 1541, 콜렉트콜, 패스콜, KT 카드, 월드폰플러스카드, 080, 0502, 미팅콜 등)을 이용한 통화료, 나우콜, 소프트폰 및 114 번호안내통화 등은 제외함
※ '별표 2'의 복지통신전화 및 보도용 전화 요금감면 대상자가 이 상품에 가입시 '별표 2'의 감면적용을 제외함
※ KT 텔레캅과 결합상품으로 이용시 월정액 20% 할인

머. 통합 브랜드변경 고객감사 프로모션 할인

(1) 개요 : 프로모션 기간 동안 KT 시내전화 서비스에 신규로 가입한 고객에게 기본료 할인을 제공할 수 있음

(2) 가입대상 : KT 시내전화 (개인) 가입자 중 신규

(3) 프로모션기간 : 2009. 4.08 ~ 5.31

(4) 할인액 : 기본료 1 개월

(5) 할인반환금 : 1 년 이내 해지시 할인받은 금액을 반환함

※ 결합서비스 관련 내용은 'KT 결합서비스 이용약관' 참조

버. KT 집전화 3000 요금제

(1) 상품 개요 : 월정액(기본료 포함)을 납부하는 경우 시내통화, 시외통화, 시내전화에서 인터넷전화로 거는 통화, 시내전화에서 kt 이동전화로 거는 음성통화를 무제한급으로 제공

(2) 가입 대상 및 조건 : KT 시내전화 이용고객

(3) 서비스 내용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월정액	무료통화 범위
유선 3000	12,100 원	시내통화, 시외통화, 시내전화에서 인터넷전화로 거는 음성통화
유무선 3000	16,500 원	시내통화, 시외통화, 시내전화에서 인터넷전화로 거는 음성통화, 시내전화에서 kt 이동전화로 거는 음성통화

※ 불법 및 악용방지를 위해 무료통화는 월 최대 3,000 분까지 제공

- 무료통화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표준요율(평상시간) 적용(단, 시외는 39 원/180 초)

※ 지능망(전국대표번호, 무료전화 080, 평생번호, 콜렉트콜, kt 기업전화회의, 060 전화정보, 선/후불카드 등)통화, 114 연결 통화료, 특수번호 통화료 등은 무료통화 범위에서 제외

※ 집전화 신규 가입과 동시에 해당 요금제(3 년 약정) 가입시 가입비 할인(중도해지 시, 할인반환금 부과)

※ 타 할인 및 복지감면과 중복 적용 불가(단, 결합 3 년 약정인 경우 'KT 결합서비스 이용약관'에 준하여 할인 제공 함)

(4) 이용요금

(기본료 포함, 부가세 포함)

구분	약정기간 월정액		
	1 년약정	2 년약정	3 년약정
유선 3000	11,330 원	10,450 원	8,470 원
유무선 3000	15,400 원	14,300 원	11,550 원

(5) 할인반환금

ㅇ (2016.3.31 이전 신규접수고객) 요금제 가입회선에 대하여 약정기간 해지 시, 할인반환금 부과

- 산정식 : 이용기간 × (약정기간 할인금액 - 이용기간 할인금액)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이용기간 할인금액		
	1 년미만	2 년미만	3 년미만
유선 3000	0 원	770 원	1,650 원
유무선 3000	0 원	1,100 원	2,200 원

ㅇ (2016.4.1 이후 신규접수 고객) 요금제 가입회선에 대하여 약정기간 해지 시, 할인반환금 부과

- 산정식 : ∑ [약정기간별 총 할인금액 X (1 – 약정기간 별 할인반환금 할인율)]

※ 약정기간별 총 할인금액 : 약정 이용기간별로 제공받은 약정 할인액의 합산금액
(약정 할인액 : 무약정 요금 – 약정별 요금)

※ 약정기간별 할인반환금 할인율 : 약정 이용기간별로 제공받은 약정 할인액의 합산금액에 대해 할인율을 적용하여 위약금 부과

※ 할인반환금 할인율

구분	약정기간	약정 이용기간	할인율
유선 3000 유무선 3000	1 년	계약 후 ~ 6 개월 이내	0%
		계약 후 7~9 개월 이내	20%
		계약 후 10~12 개월 이내	130%
	2 년	계약 후 ~6 개월 이내	0%
		계약 후 7~12 개월 이내	60%
		계약 후 13~16 개월 이내	95%
		계약 후 17~20 개월 이내	140%
		계약 후 21~24 개월 이내	180%
	3 년	계약 후 ~6 개월 이내	0%
		계약 후 7~12 개월 이내	30%
		계약 후 13~16 개월 이내	65%
		계약 후 17~20 개월 이내	75%
		계약 후 21~24 개월 이내	100%
		계약 후 25~28 개월 이내	110%
		계약 후 29~32 개월 이내	125%
		계약 후 33~34 개월 이내	170%
		계약 후 35~36 개월 이내	280%

(6) 계약의 해지 : 가입대상 변경 사용, 계약자 변경, 공동이용, 광고 및 상업적 목적 등 해당 상품을 악용할 경우, 케이티는 직권해지 할 수 있음

※ 결합서비스 관련 내용은 'KT 결합서비스 이용약관' 참조

[별표 3]

부가서비스 종류 및 내용

종 류	내 용
착신통화 전 환	걸려 온 전화를 다른 유선전화 또는 이동전화로 전환하여 주는 서비스 ㅇ 통화중 착신통화전환 ㅇ 조건부 착신통화전환 ※ 착신전환 설정 오류로 인해 호를 수신한 가입자가 설정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착신전환 설정이 임의로 해제될 수 있음
통화중대기	착신전화가 통화중일 때 걸려 온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지정시간 통 보	이용자가 사전에 입력한 시간을 안내하여 주는 서비스
단축다이얼	전화번호를 두자리로 단축하여 전화걸 때 편리하게 하는 서비스
부재중안내	발신자에게 부재중으로 인해 전화를 받을 수 없음을 안내하는 서비스
직통전화	수화기를 들고 일정시간 기다리면 지정된 전화로 자동연결하는 서비스
삼인통화	발신자가 두명의 착신자를 호출하여 동시에 통화할 수 있는 서비스
대표번호	착신을 대표하는 전화번호를 정하고 그 대표번호가 통화중인 경우 다른 회선에 순차적으로 자동 연결하여 주는 서비스
발·착신 전 용	전화를 발신만 이용하거나 착신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월구전화	이전 등으로 인하여 수용국이 변경된 경우에도 기존 전화번호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타인사용 증설전화	전화를 별도로 청약하지 않고 기존 전화회선에 연결하여 전화를 청약한 것과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통화연결음 (링고)	발신자가 이용고객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단순한 통신신호음 대신에 다양한 연결음(음악, 기업광고/홍보음, 멘트 등)을 들려주는 서비스
네임링고	통화연결음이 들리기 전 5~7 초 간 고객이 설정한 음원(인사말, 응대멘트 등)을 들려주는 서비스
발신번호표시(CID) 서비스	발신인의 전화번호를 통화 개시전에 발신번호표시가 가능한 수신인의 단말장치에 발신번호를 표시하여 주는 서비스
메시지(SMS) 서비스	메시지서비스가 가능한 단말기를 이용하여 유선단말기간 혹은 이동전화와 SMS(단문메시지) 및 E-mail, FAX 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서비스
통화중 자동연결 서비스	착신자가 통화중인 경우, 착신자의 통화가 종료된 즉시 발신자를 호출하여 착신자와 자동으로 호를 연결시켜주어 통화가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 다만, 부재중 또는 통화중의 상태가 30 분이상 지속되는 등의 경우에는 자동연결이 되지 않음
번호유지서비스	동일 통화권내에서 설치장소를 변경하여 수용국이 변경되더라도 기존 전화번호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국제전화안내 차단서비스	국외에서 국내로 발신된 전화에 대한 국외발신 안내서비스를 이용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표시 하지 않는 서비스

[별표 4]

kt 멤버십

1) 개 요

kt 멤버십(이하 "멤버십") 제도는 케이티(이하 "회사")가 자사 상품 가입자에게 자율적으로 제공하는 고객유지관리 프로그램입니다.

회사는 회사의 6 대 상품(모바일, 인터넷, 집전화, 인터넷전화, IPTV, 와이브로) 가입자가 별도의 절차를 통해 가입한 멤버십 회원(이하 "회원") 대상으로, "내부 디바이스 구매, 내부 서비스 요금 결제 및 외부 제휴 가맹점에서 판매하는 상품(용역 포함)의 가격할인 또는 각종 이벤트 행사"(이하 "고객 혜택")를 제공합니다.

2) 회원가입 및 이용 조건

① 멤버십 회원은 가입자 명의 기준으로 가입하며, 6 대 상품 해지 시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 단, 회사의 별도 기준에 따라 일부 상품 가입자에 대해 회원 가입을 제한하거나 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② 회사는 고객혜택의 구체적인 사용 방법과 제공범위에 대해 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하며, 고객혜택은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전년도 멤버십 사용실적이 있는 회원을 대상으로 해당 회원이 보유한 "할인한도(이하 "포인트")"에서 연회비 대신으로 매년 1 월 포인트 1,000 점을 차감하되, 차감시점에 잔여 포인트가 1,000 점 미만이면 잔여 포인트 전체를 차감합니다.
(2018 년부터 연회비 폐지)

3) 운영 내용

① 회사는 회원 대상으로 회원인증을 위한 별도 카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회원 명의의 6 대 상품의 자사매출 납부액, 사용기간 등을 고려하여 매년 '회원등급'(이하 "등급")을 산정할 수 있으며, '등급 및 할인한도("포인트")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회사정책상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멤버십 등급 및 할인한도("포인트") 기준 >

등급	VIP	골드	실버	화이트	일반
기준	연간 자사매출 납부액 100만원 이상	연간 자사매출 납부액 60만원 이상	연간 자사매출 납부액 40만원 이상	연간 자사매출 납부액 20만원 이상	연간 자사매출 납부액 20만원 미만
연간 포인트	12만점	10만점	7만점	5만점	없음

※ 등급 및 포인트 부여 상세기준 (모바일 사용기간은 개통일로부터 산정)

- 모바일 사용기간이 12 개월 미만인 모바일 상품 가입자에게는 최소 화이트 등급을 부여함
- 등급에 따른 연간포인트는 매년 1 월 1 일에 부여함(회사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사전에 홈페이지에 공지함). 단, 2015 년에 한하여 기존 연간 포인트 부여일에 부여
- 연중에 멤버십에 가입하는 회원의 경우 가입시 해당 회원의 등급에 따른 포인트를 가입월부터 연말까지 월할 계산하여 포인트를 부여함
- 기존에 이용 중인 6 대 상품이 없는 고객(회사 서비스 최초 가입고객)의 경우, 6 대 상품 신규 가입 후 15 일째 되는 날 포인트가 부여됨
- 모바일 사용기간 관련 추가사항(사용기간은 1 월 1 일 기준으로 산정)
  * 모바일 사용기간이 3 년 이상 4 년 미만인 가입자가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포인트 1 만점 추가 부여
  * 모바일 사용기간이 6 년 이상 7 년 미만인 가입자가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포인트 2 만점 추가 부여
  * 모바일 사용기간이 9 년 이상 10 년 미만인 가입자는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포인트 3 만개 추가 부여
  * 모바일 사용기간이 6 년 이상이고 6 대 상품 연간 자사매출 납부액 60 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가입자는 VIP 등급을 부여 (사용기간은 1 월 1 일, 7 월 1 일 기준)
  * 회사는 추가 포인트 신청방법을 홈페이지에 공지하며, 신청이 가능한 고객에게 별도의 절차(홈페이지, LMS 등)로 안내할 수 있음

※ 2015 년 등급 및 포인트 부여 변경 관련사항

- 2014 년에 연간포인트를 부여 받은 고객의 2015 년 연간포인트는 기존 연간포인트를 부여한 날에 연간포인트 부여일부터 연말까지 월할 계산하여 연간포인트를 부여함

(예시) '14 년 7 월에 포인트 10 만점을 받은 회원(VIP 등급)은 '14 년 7 월~'15 년 6 월 기간에 해당하는 포인트가 부여된 것으로, (VIP 등급 유지시) '15 년 7 월에 포인트 12 만점에 대한 6/12 에 해당하는 6 만점을 추가로 부여

③ 회사는 별도의 이벤트를 통해 포인트를 추가로 부여하거나 특정 등급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추가된 포인트의 부여/사용/소멸 조건, 등급 부여/유지 조건 등에 대해서는 해당 이벤트 내용에 따릅니다.

④ 멤버십 할인한도("포인트")의 상세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여 사유가 발생한 6 대 상품의 종류에 따라 포인트의 사용 조건을 다르게 운영하지 않습니다.
2. 포인트의 부여 방식(연간/이벤트 등)에 따라 부여/사용 조건이 다를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membership.kt.com)를 통해 게시합니다.

3. 6 대 상품의 자사매출 납부액의 요금항목
   - 집전화 : 기본료,국내통화료(단, 장기이용 우수고객 우대프로 그램 혜택을 받는 회선은 제외)
   - 인터넷전화 : 기본료, 국내통화료
   - 인터넷 : 기본상품의 서비스이용료
   - IPTV : 기본상품의 서비스이용료(단, olleh tv skylife 는 제외)
   - 모바일 : 기본료, 국내통화료, 데이터통화료
   - 와이브로 : 기본서비스의 기본료
   * 연간 자사매출 납부액은 6 대 상품의 연체액, 부가세, 소액결제, 정보이용료, 회수대행, 단말대금 등을 제외한 등급산정 직전 12 개월의 합산액(요금할인을 적용받은 매출액은 자사매출 납부액에서 제외)
4. 멤버십 가입 시 모바일에 적립된 보너스마일리지, 장기할인 마일리지는 소멸되며, 마일리지 1 점당 포인트 1 점씩 부여됨
5. 포인트의 차감 기준은 할인받은 금액 기준임(단위 : 할인액 1 원 당 포인트 1 점으로 산정)
6. 포인트는 부여된 당해년도 말까지 유효함(단, 2015 년 3 월 1 일 이전에 부여된 포인트는 부여된 날부터 24 개월 간 유효)
7. 포인트는 회원 또는 회선 기준으로 부여되며, 타 회원에게 양도할 수 없음
   단, 모바일 청소년요금상품 가입자에 한해 가입자와 가입자의 법정대리인 관계의 회원간에는 양도할 수 있으며, 청소년 요금제 가입시 등록한 법정대리인이 아닐 경우 별도의 가족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를 제출해야 함
8. 포인트는 가입 회선의 해지 시 소멸되며, 명의변경 시 승계되지 않음.
   단, 가족간 6 대 상품의 마지막 회선 명의 변경시에는 포인트의 승계를 신청할 수 있으며, 승계 신청시 가족증빙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를 제출해야 함
   (포인트 승계 신청자가 멤버십 비회원일 경우 승계 신청 7 일 이내에 멤버십에 가입하여야 하며, 7 일 초과시에는 승계 불가함)
9. 하나의 결합상품에 가입한 가족 간에 한해 포인트를 양도할 수 있으며, 결합상품 가입시 가족관계를 확인한 경우는 가족증빙서류 제출 생략 가능
   ※ KT 패밀리박스 서비스의 고유 기능인 '포인트박스 담기/꺼내기' 를 이용한 가족간의 간접 양도의 경우, 가족증빙서류가 필요치 않음
10. 상기 7~9 의 조항에 따라 포인트를 양도/승계받은 회원은 양도/승계받은 포인트를 재차 가족 또는 타인에게 양도/승계할 수 없음

⑤ 회사는 포인트의 유효기간 만료일 1 개월 전, 회원의 요금명세서에 안내합니다. (단, 타인명의 서비스에 합산청구된 회원의 포인트는 명세서에 표기되지 않으므로 홈페이지, 콜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⑥ 멤버십은 모바일의 일정 서비스((구)멤버십, 장기마일리지, 보너스마일리지)와 중복해서 가입할 수 없습니다.

⑦ 회사는 멤버십 제도의 변경시 7 일 이전, 회원에게 불리하게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는 30 일 이전에 약관에 반영하고, 충분한 사전 공지 후에 시행합니다. 단, 관련 법령 변경 등 회사가 사전에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약관에 반영 즉시 시행할 수 있습니다.

[별표 5]

시내전화 신규 청약 구비서류

【개인】

구 분		구비서류		비고
		본인	대리인	
개인		본인 신분증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신분증	
외국인	일반,외교관 주한미군 등	외국인등록증, 여권, 외교관 신분증, 주한미군 ID 카드 중 1 종	여권, 외국인등록증, 외교관신분증, 주한미군 ID 카드 중 1 종, 대리인신분증	
	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등록증, 여권 중 1 종	국내거소신고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중 1 종, 대리인신분증	
미성년자		본인 신분증, 법정대리인 가입동의서,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법정대리인 입증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 내방시> 법정대리인 신분증, 법정대리인 가입동의서, 법정대리인 입증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인 내방시> 법정대리인 가입동의서, 법정대리인 위임장(인감날인),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법정대리인 입증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인신분증	

* 만 14 세 미만 가입자는 본인 신분증 불필요, 만 14 세 이상 가입자는 학생증/청소년증으로 본인 신분증 대체 가능
* 18 세 이상 미성년자인 대학생/직장인의 경우, 재학증명서(학생증)나 재직증명서 제출시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제외

【개인사업자 및 법인】

구 분	구비서류		비고
	본인(대표자)	대리인	
개인사업자	본인(대표자)신분증, 사업자 등록증	인감증명서, 위임장, 사업자등록증, 대리인신분증	
상장/비상장/ 공공법인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대표자 신분증 (공동대표인 경우는 공동대표 전원이 신청함)	사업자등록증, 대리인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법인)	
국가기관또는 지방자치단체	고유번호증(또는 사업자등록증), 대리인신분증(또는 공무원증), 직인이 날인된 위임장(또는 위임공문)		
미군부대	고유번호증(또는 공문), 부대장 ID 카드, 대리인신분증(ID 카드)		

시내전화 해지 청약 구비서류

① 창구【개인】

구 분		구비서류		비고
		본인	대리인	
개인		본인 신분증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신분증	
외국인	일반,외교관 주한미군 등	외국인등록증, 여권, 외교관신분증 중 1 종	여권, 외국인등록증, 외교관신분증 중 1 종, 대리인신분증	
외국인	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등록증, 여권 중 1 종	국내거소신고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중 1,종, 대리인신분증	
미성년자		본인 신분증, 법정대리인 동의서,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법정대리인 입증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 내방시> 법정대리인 신분증, 법정대리인 동의서, 법정대리인 입증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인 내방시> 법정대리인 동의서, 법정대리인 위임장(인감날인),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법정대리인 입증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인신분증	

【개인사업자 및 법인】

구 분	구비서류		비고
	본인(대표자)	대리인	
개인사업자	본인(대표자)신분증,	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상장/비상장/공공법인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대표자 신분증(공동대표인 경우는 공동대표 전원이 신청함)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 날인 위임장(위임공문), 대리인신분증	
국가기관또는 지방자치단체	고유번호증(또는 사업자등록증), 대리인신분증(또는 공무원증), 직인이 날인된 위임장(또는 위임공문)		
미군부대	고유번호증(또는 공문), 부대장 ID 카드, 대리인신분증(ID 카드)		

② 팩스, 우편 신청 : 본인의 창구내방과 동일 서류 제출

③ 전화접수(100 번)는 아래와 같이 본인 확인 후 처리 합니다.

1. 해당전화에서 걸려온 경우 본인 확인(성명, 생년월일, 성별 등) 후 접수
2. 해당전화가 아닌 경우 자동이체,카드이체 고객은 이체내역 및 본인 확인(성명, 서비스번호, 생년월일, 성별 등) 후 처리
3. 기타의 경우는 창구 내방과 동일한 서류 제출

④ 그 외 예외적인 경우

구분	해지사유	대리인제한	구비 서류	비 고
일반	사 망	가족	사망확인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제적등본) 중 1종	ㅇ공통 : 대리인신분증 ㅇ입영일자/부대조회자료는 www.mma.go.kr에서 조회 가능
	군입대	가족	군복무확인서(또는 병무청 Web Site 내 입영일자/부대조회 자료)	
	장기체류	가족	출입국사실에 관한 증명서	
	형집행 중인 자	가족	재소증명서	
	행방불명	가족	행방불명 확인 서류	
법인	법인파산	파산전 대표자	말소등기부등본, 대표자 신분증	

※ 가족이 대리인으로 방문할 때 가족확인서류 추가 필요(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 가족의 범위 : 동일한 주민등록상(동거인 제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상에 포함된 사람

⑤ 제 5 조의 1(계약의 해지)의 ⑩항 할인반환금 50% 감경을 위한 구비서류 (최근 1 개월 이내 발행된 서류여야 함)

해지사유	구비서류
KT 서비스 설치 불가	KT 내부서식
해외 이민	신분증 해외이주신고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본인인 경우 생략)

부가서비스(요금제 포함) 신규 및 해지 청약 구비서류

① 창구

【개인】

구 분		구비서류		비고
		본인	대리인	
개인		신분증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신분증	
외국인	일반, 외교관 주한미군 등	외국인등록증, 여권, 외교관신분증, 주한미군 ID 카드 중 1 종	여권, 외국인등록증, 외교관신분증, 주한미군 ID 카드 중 1 종, 대리인신분증	
	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등록증, 여권 중 1 종	국내거소신고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중 1 종, 대리인신분증	

미성년자	본인 신분증, 법정대리인 가입동의서,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법정대리인 입증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 내방시> 법정대리인 신분증, 법정대리인 가입동의서, 법정대리인 입증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인 내방시> 법정대리인 가입동의서, 법정대리인 위임장(인감날인),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법정대리인 입증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인신분증	

【개인사업자 및 법인】

구 분	구비서류		비고
	본인(대표자)	대리인	
개인사업자	본인(대표자)신분증	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상장/비상장/공공법인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대표자 신분증(공동대표인 경우는 공동대표 전원이 신청함)	사업자등록증, 대리인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법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고유번호증(또는 사업자등록증), 대리인신분증(또는 공무원증), 직인이 날인된 위임장(또는 위임공문)		
미군부대	고유번호증(또는 공문), 부대장 ID 카드, 대리인신분증(ID 카드)		

② 팩스, 우편 신청 : 본인의 창구내방과 동일 서류 제출
③ 전화접수(100 번)는 아래와 같이 본인 확인 후 처리 합니다.
1. 해당전화에서 걸려온 경우, 신분증 사본 및 본인 확인(성명, 생년월일, 성별 등) 후 처리
2. 해당전화가 아닌 경우, 자동이체, 카드이체 고객은 이체정보 및 본인 확인(성명, 서비스번호, 생년월일, 성별 등) 후 처리
3. 기타의 경우는 창구 내방과 동일한 서류 제출
④ 인터넷 신청 : KT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일시정지(일시이용중단) 기간 연장을 위한 구비서류

① 제 20 조(일시정지(일시이용중단)) 제③항의 일시정지(일시이용중단) 기간 연장을 요청하기 위한 구비서류 (최근 1 개월 이내 발행된 서류에 한함)

일시정지(일시이용중단) 사유	구비서류
군입대	가입자 본인 명의의 병적증명서, 입영사실확인서 등 병역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서식, 입영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 초본, 입영일자/결과조회 (병무청 사이트에서 이용가능) 서류 1 종

해외유학	해외학교의 직인이 찍힌 공문서 1종

※ 각종 청약시 구비서류 공통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등 대면 확인 가능한 신분증
* 위임장/인감증명서 : 신청자, 개인사업자 본인(대표자) 및 법인의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 상기 구비서류 중 '인감증명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제출 가능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수임인과 위임장의 수임인이 동일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위임장에는 인감 날인 대신 본인 서명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 위임대리인 제도

* 상장/비상장/공공 법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고객이 "법인/기관 위임대리인"을 사전 등록할 경우, "법인/기관 위임대리인"이 해당 법인/기관 고객을 대리하여 대리인 신분증 만으로 청약 등 업무 처리가 가능합니다.

위임대리인 등록 구비서류	위임대리인 신청서(인감 날인), 법인인감증명서(공공기관의 경우 위임공문),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리인신분증 사본, 대리인 재직증명서(또는 인감 날인 위임공문)
비고	* 위임대리인의 권한은 등록일 기준 최대 1년 간 유효 * 위임대리인 사전 등록 신청은 직영대리점, KT 플라자, 사내영업대표를 통해서만 가능

* 기타 관련 사항은 kt.com(www.kt.com) 웹사이트 참조